

의정활동보고서

제341회 임시회
(2023. 8. 29. ~ 9. 12.)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처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제341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해 여름보다 길고 혹독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극한 호우와 폭염,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도민들에게 큰 아픔과 시련을 주었습니다.

먼저 이번 재난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수해 당시 수해지역 특별지원과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 추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말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해를 계기로 재난대응 체계와 매뉴얼에 대해 전면 점검하고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도민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12대 의회는 지난 1년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와 이번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분야별로 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책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개편으로 의정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정책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하나하나 녹여냈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도민과 함께하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여러 정책과제와 목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여 도민들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도정질문과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세수 감소에 따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신속한 수해복구, 민생경제의 안정 등을 위해 편성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내 일처럼 적극 발 벗고 나서주신 60명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22
IV. 민원처리	23
V. 본회의 보고사항	24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2
□ 김 창 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32
□ 황 명 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60
□ 임 병 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84
VII. 5분 자유발언	114
□ 정 경 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14
□ 황 두 영 의원(교육위원회)	120
□ 이 동 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24
□ 이 형 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29
□ 윤 중 호 의원(교육위원회)	132

부 록

- 조 례 안(36건) 139
- 예 산 안(1건) 315
- 동 의 안(5건) 321
- 결 의 안(1건) 331

I. 개 황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2023년 8월 29일에 개최하여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10회, 특별위원회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9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기욱 의원의 신상발언 후,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산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화) 오전 11시 개의하여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49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심사 등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 극복과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42회 임시회로 2023년 10월 10일(화) 오전 11시에 개최를 약속하고 폐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 다. 집회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11: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23년 8월 29일 ~ 9월 12일(15일간)
- 나. 개의·개회 횟수
 - 본회의 개의 : 2회(누계 25회)
 - 위원회 개회

(단위 : 회)

구 분	계	상임위원회							특 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예결 결산	기타
금 회	12	2	1	2	1	1	2	1	2	-
누 계	156	15	20	21	15	16	17	16	19	17

※ 누계는 제12대 의회 개최횟수

3. 활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안 건	비고
8.29.(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창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임병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9.12.(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안 건	비고
9.12.(화) 11:00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개의일시	안 건	비고
9.12.(화) 11:00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일시	안 건	비고
8.29.(화) 10: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9.12.(화) 10:30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회일시	안 건	비고
8.30.(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해안전락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 소관) ○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산업국 소관) ○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자유치실 소관)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일시	안 건	비고
8.29.(화) 17: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8.30.(수) 10:30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 ○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 계획 보고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건강국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회일시	안 건	비고
8.30.(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회일시	안 건	비고
8.30.(수)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축산유통국 소관)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회일시	안 건	비고
8.29.(화) 16:30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8.30.(수) 10:00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교육위원회>

개회일시	안 건	비고
8.30.(수) 10:00	<p>□ 안건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일시	안 건	비고
8.29.(화) 11:5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9.11.(월) 10:30 (제2차)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처리 ㉠+㉡	의 결					철회 ㉢	계류 ㉣	비 고	
			계 ㉠	가 결		부 결	기 타				폐 안
				원안	수정						
계	49 (350)	49 (347)	49 (344)	46 (319)	3 (25)	- (0)	- (0)	- (0)	0 (3)	0 (3)	
조 례 안	소 계	36 (206)	36 (204)	36 (204)	34 (185)	2 (19)	- (0)	- (0)	- (0)	0 (2)	
	의원발의	32 (154)	32 (152)	32 (152)	30 (146)	2 (6)				(2)	
	위원회 제안	1 (7)	1 (7)	1 (7)	1 (6)	(1)					
	도지사 제출	2 (32)	2 (32)	2 (32)	2 (22)	(10)					
	교육감 제출	1 (13)	1 (13)	1 (13)	1 (11)	(2)					
	규칙안	0 (1)	0 (1)	0 (1)	(1)						
예산·결산	1 (13)	1 (13)	1 (13)	(9)	1 (4)						
동의·승인	5 (55)	5 (55)	5 (52)	5 (50)	(2)			(3)			
건의안	1 (3)	1 (3)	1 (3)	1 (3)							
결의안	2 (23)	2 (22)	2 (22)	2 (22)					(1)		
기타안	4 (49)	4 (49)	4 (49)	4 (49)							
청원	(0)	(0)	(0)								

※ ()안은 제12대(제332회~제341회)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금회		
-	-	-	-

2. 진 정

위원회	접수	처 리					처리 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6 (13)	6 (13)	5 (11)			1 (2)	
의회운영							
기획경제	(2)	(2)	(2)				
행 정 보건복지	1 (1)	1 (1)	1 (1)				
문화환경	1 (4)	1 (4)	1 (4)				
농 수 산	1 (1)	1 (1)	1 (1)				
건설소방	2 (4)	2 (4)	1 (2)			1 (2)	
교 육	1 (1)	1 (1)	1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12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49건(조례안 36, 예산안 1, 동의안 5, 건의안 1, 결의안 2, 기타안 4)

2. 처리 의안 : 49건

- 원안가결 : 46건(조례안 34, 동의안 5, 건의안 1, 결의안 2, 기타안 4)
- 수정가결 : 3건(조례안 2, 예산안 1)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36건(원안가결 34, 수정가결 2)

연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8.17.	정경민 의원 외 22명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2	'23.8.17.	배진석 의원 외 28명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3	'23.8.29.	위원장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23.8.17.	이선희 의원 외 15명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5	'23.8.17.	이철구 의원 외 18명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23.8.17.	윤중호 의원 외 26명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 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7	'23.8.17.	도지사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8	'23.8.17.	최태림 의원 외 12명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
9	'23.8.17.	박선하 의원 외 14명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
10	'23.8.17.	김원석 의원 외 19명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1	'23.8.17.	황명강 의원 외 23명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2	'23.8.17.	권광택 의원 외 41명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23.8.17.	김홍구 의원 외 27명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14	'23.8.17.	박채아 의원 외 16명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15	'23.8.17.	박순범 의원 외 18명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3.8.17.	김경숙 의원 외 29명	경상북도 문화마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23.8.17.	김희수 의원 외 21명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3.8.17.	임병하 의원 외 23명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23.8.17.	도지사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23.8.17.	이철식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

연 번	접 수 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 고
21	'23.8.17.	황재철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22	'23.8.17.	박홍열 의원 외 17명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23.8.17.	남영숙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24	'23.8.17.	서석영 의원 외 19명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25	'23.8.17.	최병근 의원 외 16명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23.8.17.	남진복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
27	'23.8.17.	이우청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23.8.17.	박채아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23.8.17.	박채아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
30	'23.8.17.	차주식 의원 외 28명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31	'23.8.17.	김홍구 의원 외 25명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32	'23.8.17.	윤중호 의원 외 21명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3	'23.8.17.	황두영 의원 외 17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

연 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34	'23.8.17.	배진석 의원 외 25명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35	'23.8.17.	윤종호 의원 외 21명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36	'23.8.17.	교육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예 산 안 : 1건(수정가결 1)

연 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8.17.	도지사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가결

○ 동 의 안 : 3건(원안가결 3)

연 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8.17.	도지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원안 가결
2	'23.8.17.	도지사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23.8.17.	도지사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3.8.17.	도지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5	'23.8.17.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 의안	"

○ 건 의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8.17.	권광택 의원 외 41명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결 의 안 : 2건(원안가결 2)

연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8.29.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 가결
2	'23.9.12.	김대진 의원 외 9명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기 타 안 : 4건(원안가결 4)

연번	접수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8.29.	의장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 가결
2	'23.8.29.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23.8.29.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23.8.29.	의장	휴회의 건	"

4. 조례 공포 사항 : 37건(도 28, 교육청 9)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884호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9.25.	교육청
2	제4885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23.9.25.	"
3	제4886호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3.9.25.	"
4	제4887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3.9.25.	"
5	제4888호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9.25.	"
6	제4889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23.9.25.	"
7	제4890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9.25.	"
8	제4891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5.	"
9	제489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3.9.25.	"
10	제4893호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3.9.25.	도
11	제4894호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10.5	"
12	제4895호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0.5	"
13	제4896호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23.10.5	"
14	제4897호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10.5	"
15	제4898호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0.5	"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6	제4899호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0.5	도
17	제4900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3.10.5	"
18	제4901호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23.10.5	"
19	제4902호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23.10.5	"
20	제4903호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10.5	"
21	제4904호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23.10.5	"
22	제4905호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10.5	"
23	제4906호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23.10.5	"
24	제4907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10.5	"
25	제4908호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0.5	"
26	제4909호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10.5	"
27	제4910호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0.5	"
28	제4911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0.5	"
29	제4912호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0.5	"
30	제4913호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23.10.5	"
31	제4914호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3.10.5	"
32	제4915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10.5	"
33	제4916호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0.5	"

연 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34	제4917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10.5	도
35	제4918호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10.5	"
36	제4919호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23.10.5	"
37	제4920호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0.5	"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341회 임시회(2023년 8월 29일) 》

□ 김창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지난 뜻하지 않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그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도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0일, 저를 비롯한 구미시민과 경북도민의 염원이었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구미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는 경북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지방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간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요			
군공항		민간 공항	
위 치	군위군 소보면 및 의성군 비안면 일원	사 업 량	0.8 km ² (25만평)
사업기간	2014 ~ 2030	사 업 비	1조 4,000억원
사 업 량	16.9km ² (511만평)		
사 업 비	11.4조원		
사업방식	군, 민간 공항 동시 이전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겸하는 대구국제공항을 2030년까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미래 50년 발전기지로 군위군에 미래첨단산업단지 및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7월 군위군 편입과 동시에 신공항 개항에 맞춰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군위군에 200만m² 면적의 세계적인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건설될 공항신도시는 4개 권역으로 나뉘 스마트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 미래 발전과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신공항과 연계한 경상북도 전역의 산업을 아우르는 방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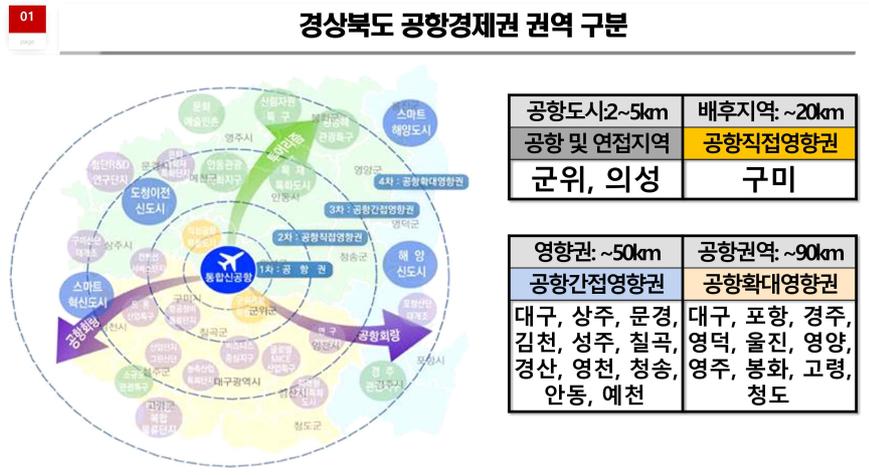
본 의원은 도 전역을 아우르는 장기 발전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경북이 우선해야 할 것은 개발역량을 집중해 사업효과를 최대한, 그리고 빨리 경북으로 가져오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선 의성에 들어설 공항신도시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조성하지 못한다면 공항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던 경북도청신도시는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역과 동떨어져 건설되고,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간투자예외 면을 받으며 2단계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앞으로 군위군에 통합신공항 건설 개발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이 떠난 K-2 후적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의성 공항도시가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신공항 개발로 인한 투자유치, 인구유입 등 파급효과를 경북으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지 분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공항도시 조성과 동시에 공항 직접영향권인 배후지역을 연계 개발해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가져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하지만 불과 직선거리 10km에 경북의 IT·4차 산업·반도체, 항공산업 및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구미가 배후지역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2022년 상반기 기준 경북 수출액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물류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상위 수출품목 1위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대학, 지식기반 제조업, 금호테크 노벨리 등의 핵심 인프라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되었고, 7월 20일에는 국가첨단전략

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되며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항공물류 관련 산업 및 주거·상업·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구미지역을 연계하여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22개 시군 간 협력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과 중복 투자로 정책이 표류하거나 지역발전 동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경우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후보지 선정부터 시군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부지선정 공모에 도내 8개 시군이 유치전을 벌였고, 5월 15일 최종 상주와 안동 두 곳을 무순위로 선정했지만 시군 간 유치전은 과열된 경쟁과 선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군의 반발 등 후유증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앞서 언급한 시군 간 분쟁이나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등 지자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개입을 꺼리거나 방관적인 모습으로 도민들에 실망을 안겨왔습니다. 이제는 경북도가 시군 간 또는 중앙정부나 타 광

역과의 이해관계나 분쟁상황의 조정·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간 협력형태로 행정협의회 92개, 지방자치단체조합 8개,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장과 관할 기초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없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도와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각자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데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02 경상북도-시군 인사교류 현황

교 류 인 원: 5개 시군, 10명

교류기관	도	타 지자체	타기관 근무부서	도 근무부서	비고
	직 급	직 급			
안동시	기술4	시설5	도 시 건 설 국 장	도 시 재 생 과	
	행정4	행정5	문 화 관 광 국 장	자 치 행 정 과	
	기술4	행정5	보 건 소 장	어 르 신 복 지 과	
구미시	행정4	행정4	미 래 도 시 기 획 실 장	사 회 재 난 과 장	
	행정5	행정5	홍 보 담 당 관	교 육 협 력 과	
영천시	행정5	행정5	기 업 유 치 과	관 광 정 책 과	
	행정4	행정5	행 정 복 지 국 장	자 치 경 찰 총 괄 과	
상주시	기술4	행정5	건 설 도 시 국 장	도 시 재 생 과	
	지도관	지도관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기 술 원	
성주군	지도관	지도관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기 술 원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경북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협약서 체결에 따라 시군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도 소속 5급 공무원들이 차례로 복귀하며, 도와 시군 간 실무 차원의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현재는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성주 5개 시군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시군 간 실무차원의 상호 교류와 소통이 줄어들면서 사업추진 관련 갈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또한 신도청 이전 후에는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도청 전입을 꺼리는 등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22개 시군에 도의 정책 방향이 잘 전달되고 있으며, 시군이 도가 설정한 큰 그림을 보고 하나 되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일련의 사태로 볼 때 도와 시군 간 결속이 약해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결·협력 정책 마련을 통해 경북 경제권 전체 파이를 키우고 관할 각 지자체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간 분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지자체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경북도가 광역단위 사무의 체계적 수행과 시군 간 이해충충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도정 발전방향을 전달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데 주효한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국·과장에서 실무진까지 경북도와 시군의 상호 일대일

인사교류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군 간 결속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확대에 도정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룸촌 등 도심 빈집문제 해결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 슬럼화와 더불어 안전사고 및 범죄율 증가, 열악한 주거환경 등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료화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시 인동동과 진미동 원룸촌 일대와 관련된 뉴스기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구미공단 활성화로 원룸 개발붐이 일면서 호황을 누렸다가 최근 삼성, LG 공장의 수도권 이전 등 구미경제의 장기 침체화로 근로자들이 하나둘 줄기 시작하면서 빈방이 급증했습니다.

구미시의 원룸 공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구미지역 원룸 6만 6000여 호 중 1만 2000여 호가 빈집입니다. 특히, 공단과 인접한 인동동과 진미동의 원룸 약 2만 7000여 호 중 29%인 7800호가 공실입니다. 즉, 세 집 중 한 집 꼴로 빈집인 셈입니다.

2개의 동 지역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대략 1만여 명이라 볼 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도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원룸촌의 경우 최근 1인

가구 급증과 함께 주거침입 범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3

2020~2021년 경상북도 1인 가구 추세

항목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1년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18.5%	23.9%	28.8%	30.4%	36.0%
1인 가구	163,919	224,611	289,704	322,569	416,697

3배 가량 증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도내 1인 가구는 41만 6697세대로 20년 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고, 경찰청의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만 1631건에서 2020년 1만 8210건으로 5년 사이 64%나 급증했습니다.

2016~2020년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

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생건수	11,631	11,823	13,512	16,994	18,210
검거건수	8,806	8,903	10,141	12,287	13,227
검거율(%)	75.7%	75.3%	75.1%	72.3%	72.6%

1인 가구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특성상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주거침입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큼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심 원룸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동에 15호 정도의 작은 독립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고 해도 통계상 빈집으로 계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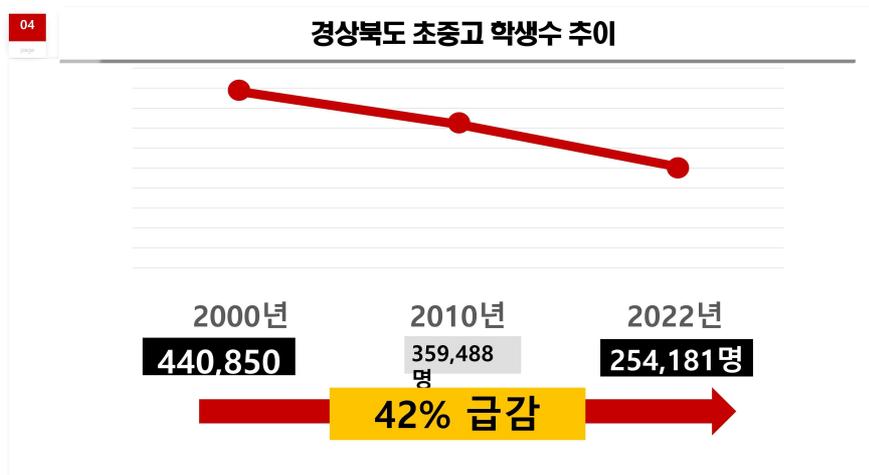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도심 빈집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내 빈집들을 활용해 어린이도서관, 어르신 쉼터, 공동육아방 등 공익적 목적의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북도의 도심 빈집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빈집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 비율 및 주거침입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대책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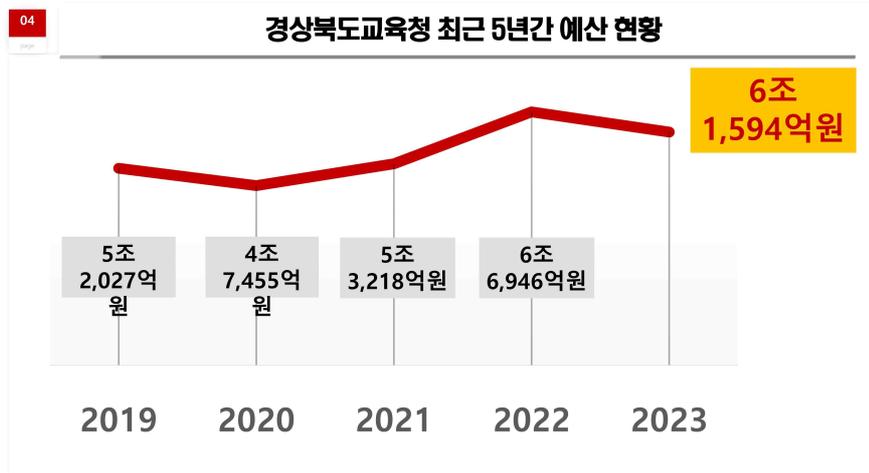
또한, 강력범죄는 국가가, 생활안전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 3년 차를 맞아 도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교육감께 경상북도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2000년도 초·중·고 학생이 44만 850명이었지만 지난해는 총 25만 4181명으로 약 42%가량 감소하는 등 급격

한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도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159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막대한 교부금 외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법정 전출금과 별개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는 비법정 전출금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12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아이들의 미래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큽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역대학 혁신 및 산학연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에 힘써야 할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교육청으로 배

정되고 있지만 전입금이 쓰이는 교육 지원사업 등에 대한 도차원의 성과관리가 미흡한데다 한발 나아가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04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

【 연도 중 교육교부금 예산변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 사례 】

- **▶(예산 이월잔액)** 2011~2021년까지 추경 신규사업의 경우 경북도교육청의 이·불용률이 55.77%, 전체 시도교육청의 이·불용률은 21.57%에 이함. 또한, 추경 중역사업도 전체 시도교육청의 이·불용률이 9.94%로 추경 시 강제 사업의 이·불용률 3.25%의 3배를 초과
- **▶(예산·회계상 지출세외 출기)** 연도 중 교육교부금이 늘어남에 따라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3조 5,067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경기도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위원회급 등의 명목으로 각 1,684억 원의 960억 원을 지급하였고,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등에게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

**2011~2021년까지 추경 신규사업의 경우
경북도교육청의 이·불용률 55.77%**(전체 시도교육청의 이·불용률은 21.57%)

**2021~2022년 '교직원 업무지원용 노트북 보급' 명목으로
행정직 공무원 등 3천7백여명에게 총 46억원 상당의 노트북 지급**

본 의원이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우선 이달 24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1년까지 추경 신규사업의 이·불용률이 전국 대비 34.2%가 높은 55.77%에 이르고, 최근 2년간 '교직원 업무 지원용 노트북 보급' 명목으로 교직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등 3700여 명에게 총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

순번	항목	지적사항	비고
1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다 집행	7억3,200만원
2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미이행	
3		중축 면적이 85㎡를 초과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를 착공하면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확인하지 않고 착공신고 수리	
4		추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공사임에도 신기술·특허공법 미적용	
5	목적사업비 및 물품관리 부적정	"경상북도메이커교육관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 33건의 공사에 대한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6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내신보강공사 설계변경 시 단가산정 부적정	
7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8		물품관리 부적정	
9		목적사업비 집행실적 정산 관리 미흡	
10		교육환경개선 목적사업비 목적 외 사용	
11	학교시설 안전관리 관련	제3중시설을 지정 대상인 폐교에 대해 제3중시설을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미실시	
12		(관교) 시설물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제3중시설을 지정을 해제하고 정기점검 비용을 절감할 것	

또한 올해 초 국조실 합동점검 결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공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7억 32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였으며,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도 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등 잘못된 예산집행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부 감사 사항 중 일부 발취

순번	지 적 사 항	금 액 (비고)
1	사립학교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23,150,520,000원
2	세입세출외원금 회계 처리 부적정	126,064,070원
3	업무추진비(경조사비)집행 부적정	10,850,000원 (217건*5만원)
4	보수 지급 부적정 (직급보조비, 교직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파견교원 교직수당가산금 및 초과근무수당, 징계처분 교원 보수 지급)	30,878,300원 (28명)
5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5,273,240원 (197명)
6	명시이월 대상 사업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795,432,000원 (11개 사업)
7	수의계약 금액 변경 부적정	9,499,602원
8	징계처분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6,044,430원
9	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부적정	1,115,446,000원 (27건)
10	시설공사 설계변경 단가 적용 부적정	2,026,000원
총 액		25,252,033,642원

지난해 연말 진행된 교육부의 정기 종합감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보조사업 결정 시 감사기관 또는 도교육청의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도교육청은 감사 처분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1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직원 약 200여 명의 보수 및 출장여비 3600여만 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우리 아이들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 약 250억 원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이러한 행태에 너무나 실망이 큼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자정작용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집행 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와 교육청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확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경북도와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창혁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공항도시 배후지역 개발과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시군 협력 추진 관련, 원룸촌 등 도시 빈집 문제 해결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이자 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며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구미 방산클러스터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 구미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요충지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공항도시와 배후지역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항경제권의 성공을 위해 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구미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경북 지역 모두 공항경제권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은 경북 지역 다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질문 주신 구미와 의성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항만 옮기는, 그렇게 하면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

다. 군위까지 대구로 떼어 주면서 공항 유치를 했던 이유는 대구·경북의 성장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4일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총사업비 2조 6000억을 투입하여 28만 평 부지에 3.5km 활주로를 가진 민간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구공항보다 5배 이상 큰 규모로 중·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공항으로 가는 길을 닦고 성장세에 있는 산업을 키워 공항도시 의성과 배후도시 구미를 하나의 경제도시처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의성과 구미를 하나의 도시처럼 만들기 위해 최우선 과제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교통망 확보입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배후도시를 잇는 10개의 도로철도 노선 432km가 계획되어 있지만 그중 우선과제로 북구미IC에서 군위JC를 잇는 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구미산단과 신공항을 잇는 철도노선 신설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의성도 구미처럼 산업도시로 키우고 항공물류기능을 강화하여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의성에는 이미 100만 평 규모의 부지에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물류단지는 의성에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위에도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은 약속대로 지키도록 절대적으

로 방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식품산업입니다. 작년 전 세계 농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달러로 한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97조 4400억으로 800조에 달하는 반도체의 13배가 넘는 시장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10조 원 정도 수출하고 있고 10% 이상 성장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국내 최대의 농식품 수출단지를 만들고 첨단식품기업을 대거 유치해 국가적인 농식품산업 거점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성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대부분 농식품산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농식품이 한류를 따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식품에 희망을 걸고 우리 지역은 농식품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성과 구미가 하나로 연결된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이 완비된 신선식품 전문 물류단지를 우선추진하고 ICT 기반 통합물류센터를 만들어 구미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를 포함한 첨단제품을 위한 특화 물류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성에 물류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면 바로 인접한 구미국가산단도 단순 생산기능을 넘어 글로벌기업들이 투자하는 산업단지가 되고, 의성과 구미가 하나로 연결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산업벨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왔을 때 구미5공단은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

런데 공항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반도체 등 산업이 들어와서 지금 5공단이 1단계는 다 팔리고 2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공항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 칩 4 동맹을 구성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기술 안보자산임과 동시에 지방시대를 열어갈 균형발전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생산유발 5조 3000억 원, 부가가치 2조 8000억 원, 그리고 6000명이 넘는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미는 연구·개발과 교육에도 강점을 지닌 도시입니다. 2020년 이미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운대학교는 항공물류산업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는 만큼 의성은 항공물류 산업을 키우고 구미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전담하는, 공항 건설과 연계한 K-U시티 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항 건설을 계기로 구미와 의성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도시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시는 도민들께서 “구미하고 의성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기 우리 안동 지역이나 상주, 포항, 경주, 영천, 청도 모두가 공항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구미와 의성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시군 협력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간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과 권한이 제대로 배분돼 있지 않은 것이고 가장 큰 원인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만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 공모하면 여러 가지 지역, 지자체가 함께 응모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면 시·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체험관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잉경쟁을 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이런 대립되고, 특히 쓰레기장 이런 것으로 또 대립이 많이 되는데 시군 조정기능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자칫 개입했다가 더 큰 소란을 키울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주민들과 화합하는 그런 경복을 만드는 데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양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시군 간에 협의가 잘되는데, 일부 돼지농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또 지금 문경, 상주 문제되고 있는 장묘장, 이런 것들

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정리가 되고 있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굳이 정리가 잘 안되면 도 지사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할 만큼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군에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이번에 국가산단 3개 되었는데 사실상 시군도 열심히 뛰었지만 도 단위에서 더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도 단위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산업단지도 시군과 함께, 또 특히 지역 국회의 원님들 열심히 같이 뛰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손 놓고 있나?’ 이 소리는 안 듣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또 시군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절대 시군 일을 자기들 일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일처럼,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현장에 계속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해 보자고 제안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 공무원 교류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중앙정부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옛날 방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안부 장관 만나서 교육제도 싹 바뀌야 된다. 과거에 학력이 부족하고 연구가 덜 된 사람이 공무원을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너무 우수합니다. 그래서 단기 교육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장기 교육을 이렇게 보냄으로써, 인사가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평

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리를 바꾸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노력해도 반기마다 한 30명 이상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시군과 교류도 어떻게 할지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연구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원룸촌은 전문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김창혁 의원님께서서는 교육재정의 내부 자정 작용 강화 및 예산 집행 내실화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서는 기획경제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시며,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어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국조실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늘봄학교 등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따라서 떠나는 초등학생은 어쩔 수가 없지만 경북의 고등학교에는 타 시·도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예산 규모는 증가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도민 수가 줄어도 도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지금 학교 현장은 과거와 달리 강의를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AI가 도입되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교육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정해지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최근 몇 년간은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세수 악화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대폭적인 교부금 감소가 예측되어 그동안 마련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교직원 관사 공사 과다 집행분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며, 감사 처분 미이행 사립학교의 재정 지원은, 이것은 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벌하게 되면 죄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과다 지급된 보수, 출장여비 등 성과급은 전액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재정의 내부 자정작용 강화 및 예산 집행 내실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불용액 감축을 위해 재정 집행 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주관에서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전 기관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경북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경상북도교육청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18년부터 돌봄사업인 굿센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 마을이 함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8개 시군과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지를 지역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복합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항 효자중학교 외에 총 7건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 밖에도 급식비, 도서관 신·증축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함을 드리며, 지방교육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김창혁 의원님께서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원룸촌 등 도심 빈집 활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도내 대표 첨단산업 도시인 구미 또한 원룸촌 등 도심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도시의 미관 저해, 안전 사각지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실효성 높은 빈집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의 10개 시군 중 포항시 등 7개 시는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 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영천시 등 3개 시는 실태 조사 중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경상북도 건축 조례 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방시대에 맞춰 시장·군수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LH 주관 추진 중인 공공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공모사업에도 민간 정비사업 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빈집 정비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 가능한 빈집을 적극 발굴한 후 어린이도서관, 공동 육아방, 마을쉼터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내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김창혁 의원님께서 원룸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상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빈집 문제는 인적이 드물고 방범시설이 부족해서 각종 범죄나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는 등 여러모로 생활 안전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경찰청을 통해 공·폐가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해서 위험 지역을 집중 순찰 노선에 편입하고, 무단 출입금지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도민 불안감 해소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방범 시설을 갖춘 원룸, 주차장 등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를 운영하고, 원룸 밀집지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 고위험군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시 경보기 등 여성 안심세트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청, 도경찰청, 도교육청, 소방본부까지 아우르는 경북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과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군청, 지역 경찰서 등과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제도도 불완전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와 맞물려서 지방이 주도하는 치안 행정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오늘 제341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시대의 새바람,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 경북 북부지역에 발생한 산사태로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경주 APEC 유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경북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많은 영역에서 활동이 왕성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양성 평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조사한 글로벌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조사국 186개국

가운데 121위였습니다. 또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여성지위 평가인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조사 대상국 29개국 가운데 올해도 29위로 11년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북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순위 성평등지수가 최하위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여성의 대표성 및 의사결정 영역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17위이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15위, 지자체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도 15위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 2> 제8회 지방선거 후보인 및 당선인 성별 현황



제8회 지방선거 경상북도 시·군의 장 선거 후보인 및 당선인 성별

(단위 : 명, %)

구분	후보인 수			당선인 수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제18회 전국 시·군 장 선거	568	535(94.1)	33(5.9)	226	219(96.9)	7(3.1)
제18회 경상북도 시·군 장 선거	56	56(100)	0(0)	23	23(100)	0(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23개 시장·군수의 선거 후보와 당선인 성별 비율을 보면 후보인 수 총 56명으로 100%가 남성이며, 단 한 명의 여성 후보자도 없었습니다. 현재 경북의 22개 시군 시장과 군수는 모두 남성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정책연구회에서 여성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 여성의 활동 장애요인으로 네 가지가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도민의 양성평등 인식 부족과 둘째, 여성의 리더교육 기회 부족. 셋째, 여성 활동의 네트워크 부족. 넷째, 일과 가정 양립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사회적 문화적 인식 균형이 기울어져 있음이 여성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 여성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 리더 약 3000명을 육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부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을 열어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신라시대에 선덕, 진덕, 진성 세 분의 여왕을 배출한 리더십과 저력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또 자랑스러운 경북의 종가문화도 종부님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지방시대를 가꾸어 갈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디지털 전환 시대 일자리에 따른 감성 개발, 행복한 경북 사회 속에서의 출산 증대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경북도의 여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 여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각 영역별 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검토와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여성 정책에 있어서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청렴, 윤리를 강조하는 ESG'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 여성의 역량 증진과 사고 전환의 기회가 될 소

통의 장, 가칭 'ESG 대한민국 여성 포럼'과 같은 전국 여성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초대형 산불, 극한 호우와 태풍, 지진 등 생존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해·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호우·폭염 등 전국 자연재난 피해액의 16%로 2위입니다. 지난 7월에는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뼈아픈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 매뉴얼과 재난 교육입니다.

지사님께서 일본 가마이시시 학교의 기적에 관해 알고 계시겠지요? 대형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심각했던 가마이시시는 실효성 있는 지진·해일 방재교육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학교에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규모 7.3의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가마이시시의 초·중학생 약 3000명 대부분이 화를 면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본 인근 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신종 재해·재난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는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관련 내용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재난 교육은 지진 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이 거의 유일합니다. 위급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도달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도민을 위한 재난 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서는 앞서 언급한 실효성 있는 재난 매뉴얼 제작과 재난 교육 확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둘째,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생존 가방은 재난 발생 시 생존 유지에 필요한 손전등·비상식량·구급용품 등을 담은 가방을 말합니다. 각종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골든타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생존 가방입니다.

다음은 재해용 라디오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해용 라디오는 라디오가 꺼져 있어도 재해 방송이 시작되면 전원과 조명이 켜지고 정보가 전달됩니다.

재해용 라디오는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시는데다가 휴대폰 소리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재해용 라디오는 건물 안에만 있으면 확실히 들리고 무엇이 긴급한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경북은 타 지역보다 재해·재난이 많고 고령층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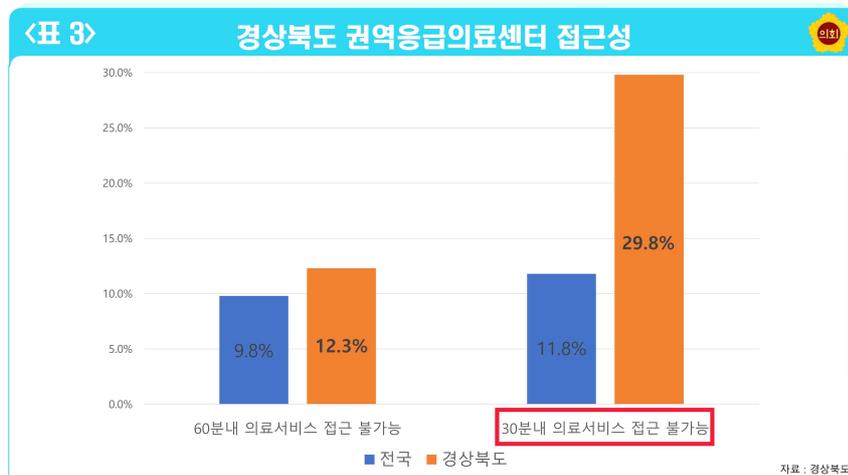
특히 지역 TV방송을 통해 상황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반복적인 실시간 자막뉴스를 보도해 주면 재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권역 의료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북에서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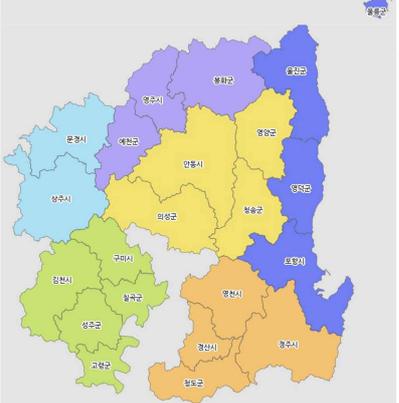
경상북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30분 이내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전국 대비 3배 가까이 낮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등의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지진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탄탄한 응급의료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 4>

경상북도 의료권역별 현황

의료권역	지역책임 의료기관	권역응급 의료센터	응급의료 이용 유출률
경주권	X	X	70.7%
상주권	○	X	48.7%
영주권	○	X	42.8%
구미권	○	○	39.6%
안동권	○	○	26.2%
포항권	○	○	17.1%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2021)

경북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포항권·안동권·구미권·영주권·상주권으로 확인됩니다. 경북의 6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경주권만이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현재 경주의 응급의료환경은 열악합니다.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응급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주권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의 최종 치료기능을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에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주는 2016년에 규모 5.8의 관측 사상 최강의 강진을 경험했으며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함께 최근에 발견된 내남단층

에 인접하여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 경주에는 6기나 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전국 고준위방폐물의 약 93%가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에 30년 이상 보관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은 지진 등의 재난으로 혹여 방사능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거부하는 희생과 불안을 경주시민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경주시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은 물론이고 재해·재난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시기적절한 응급치료 시스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경주권의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에는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경북의 하나뿐인 의과대학이 있는 병원으로서 그동안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구축하여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소아과진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산부인과를 구성하는 등 공공적 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면 경주 권역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의식주와 함께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에서 언급했듯이 열악한 경주권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경주권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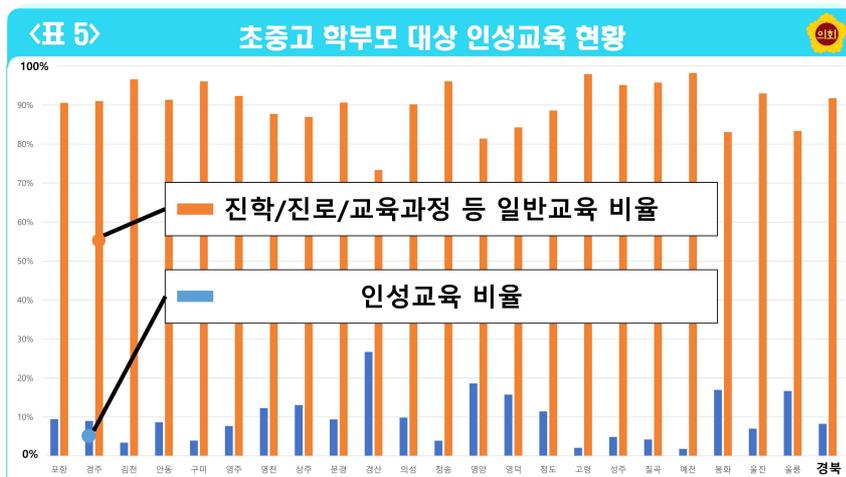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님께 학부모 교육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근래 들어 뉴스의 핵심에는 교육계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만 학교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로, 사회성과 지식을 배우고 공유하는 곳, 존중과 배려, 사랑과 행복, 꿈과 미래 등이 해당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학폭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어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했고,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진단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교육공동체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평생의 담임이자 평생 교육자인 학부모는 모든 측면에서 확실한 협력자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와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현재 유·초·중·고 부모의 연령대를 보면 MZ세대가 50% 이상입니다. 한 가정당 1 내지 2명의 자녀로 곱게 자란 MZ세대 학부모들을 적극적인 학교 교육의 협력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MZ세대 학부모와 MZ세대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육의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교육과 토론의 장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중·고 학부모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설명회, 진학지도교육, 도박 예방, 진로캠프 등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과정 설명에 대한 학부모 교육 위주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경북 22개 시군의 초·중·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시간을 보면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경주 9%, 김천 3%, 예천 2% 등 도내 시군 중에서 경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10% 내외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학부모 인성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면 교육이 쉽지 않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기본적인 부모 인성 교육, 부모 인식 제고 교육을 확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황명강 의원께서 경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재해·재난대응 도민 안전대책, 경주 권역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한국 여성 리더십 석사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현재는 행복위 위원이고 운영위 위원이고 원자력대책특별위 위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5월에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경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60년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졌지만 맞벌이 기혼여성의 가사분담률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더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

고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남성 위주의 문화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적하신 경북의 지역 성평등 지수를 보면, 특히 의사결정 부분에서 상위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광역 및 기초의원의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 관리자의 성비 등을 지표로 쓰고 있는데 1위인 대전은 50.7 점이고 우리는 32.2점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에는 제가 와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 좀 더 진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우리 도의 간부회의하면 여성이 부지사도 하고 국장들도 여럿이 있고 과장님들도 많이 배출되고, 이제 몇 년 지나면 대부분이 여성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성이 많아서 걱정을 하듯이 우리 도의 비율을 봐도 여성이 결코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수로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제도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도청에 직원들 육아휴직을 보니까 작년에 51명 갔는데 남자가 더 많이 갔어요, 남자가 27명이고 여자는 24명.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남성 위주의 사회가 많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게 좀 늦어졌는데 이제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승진 비율도 보니까 4급 이상이 '23년에 18.8%로 '17년, 6년 전에는 2.9%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8.8% 됐으니까 이런 속도로 가면 곧 과반을 넘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젊은이, MZ세대는 남녀 구별 없이 가사를 똑같이 나눠서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 우리 아들이 며느리보다 더 많이 부엌에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되어도 전혀 다르지... 그게 막 보기가 안 좋다든지 어색하다든지 이런 게 없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느리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뉴리더 아카데미, 경북 여성리더 사회참여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산에서 여성 지도자 길러내는 방식을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도의원님들이 더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우리 여성분들이, 아까 시장·군수가 한 분도 없이 전부 다 남성이다 이러는데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방 살림을 사는 것은 여성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걸 또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데 선거하는 게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도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도전하면 잘할 수 있고, 살림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우리 전체 사례를 보면 부정부패도 좀 적어질 수 있

다, 여성들이 그런 큰 자리에 가 있을 때. 기업에서도 여성들이 큰 자리에 가 있으면 깨끗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저도 시장·군수님들이 여성들이 한번 정도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앞으로 여성이 도전을 해서 한번 하는,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고 우리 도의 의식이 확 바뀌는 그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께서 좀 더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원해서 “너 그것 해 봐라.” 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여성들이 좀 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는 이제는 확실히 여성을 무슨 ‘여성이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소리 말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오히려 남성이 당분간은 좀 손해 보더라도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더 전문가들인 재난안전실장과 복지건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황명강 의원님께서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제안하시고 학부모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등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현장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이 비통해하고 저도 교육감 이전에 교사로서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든지 아동보호법, 이런 상위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돌아가신 49제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하고 추모를 하자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위법이라고 불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전국의 8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우리 경북에도 37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지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명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미 재량휴업을 전국의 535교나 재량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은 아직까지는 재량휴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현재 교육부에서는 불허하고 교육감들 중에는 일부는 또 지지를 하고 저를 포함한 일부 교육감들은 우리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고 또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지지하고 자제하는 이런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량휴업을 하고 정면충돌이 되었을 때 그 후의 갈등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크게 걱정하면서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야간집회나 또는 온라인집회 또는 날짜를 변경하는, 휴일로 변경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번에 이런 사안들도 학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컸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2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장소통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거에는 주요업무보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학부모님들과 현장에 소통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4개 권역별로 타운홀미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부모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 대상의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아동학대 등 12개 과정을 법정 필수 학부모 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학부모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단위학교 학부모 교실을 통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주제와 강사를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역할이나 진로교육 등을 주제로 해서 '22년 기준으로 168교에 6458명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인성교육 관련 강사 풀을 더욱 확충하여 보다 많은 학부모

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군의 학부모회장 지역 협의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긴급지원단을 지금 조직 중에 있는데 지원단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 19개 도서관에서도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교육을 떠나서 20시간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교육, 진로까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교육 및 부모의 인식 제고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따뜻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온마음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경북 인성교육 방향을 안내하고, 특히 인성교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 또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 또 온라인 설명회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세대공감 편지쓰기, 또 가족 식사의 날, 옛날의 밥상머리 교육을 생각합니다. 또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 뉴스나 SNS를 통해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는 확실한 협력자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황명강 의원님께서 재해·재난 대응도민 안전 대책 관련해서 재난 매뉴얼과 재난교육, 그리고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최소한의 장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재난 대비한 여러 좋은 제안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4년부터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풍수해 등 총 41개의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호우 시 발생한 유사 산사태 재난처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 유형과 복잡한 재난 전개 양상으로 인해 재난 대책 매뉴얼 보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 개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현재 작성·운영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도의 상황에 맞도록 충실히 개편할 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재난 대응 핵심활동 위주의 조치 내용을 정교화하여

일선 재난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동요령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대응 프로세스 등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한 요약 매뉴얼을 작성해서 좀 더 재난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공백 방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업무 담당자 교육을 인사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사회재난 중심의 재난교육을 자연재난 대비 교육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재난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통장을 포함 자율방재단 등 재난 관련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현장대응 중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요령 등 재난교육의 확대를 통해 산사태, 집중호우 시 핵심 재난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존가방 및 재해용 라디오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해 비상 시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에서도 재난이 발생한 후에 골든타임, 최초 72시간 이내 버틸 수 있는 비상용 생존배낭을 준비할 것

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풍수해 등 재해 상황을 고려할 때 식수와 핸드폰, 보조배터리 이런 등이 현대 시대에서는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존배낭과 아울러 제안해 주신 재해용 라디오는 전국적으로 소개나 국가 차원에서의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및 호우 피해에 따른 산사태,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생존배낭과 재해용 라디오 등의 도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재난 시 TV 지역방송 하단에 상황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반복적인 자막뉴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북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201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 8월 집중호우 시 지역방송사에 송출을 요청하여 KBS, MBC, YTN, 연합뉴스에 자막방송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방송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재난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황명강 의원님께서 경주권 의료환경

개선 방안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 의료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응급환자 의료 유출률은 32.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경주권은 응급의료 유출률이 70.7%로 포항권 17.1% 대비 53.6%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22개 시군은 6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되어 3개의 지방의료원과 2개의 적십자병원이 해당 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경주권은 공공병원이 없어 지금까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미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도 유일의 의과대학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감염병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상 운영과 야간과 주말 등 24시간 공백 없는 소아 진료체계를 갖추는 등 지금까지 지역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주권에는 중증응급환자들의 최종 진료를 담당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미지정되어 있는 등 필수의료 전달체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도에서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좀 더 기능을 보완·강화하여 경주권의 중심병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현

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40개소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여 전국 50개에서 60개로 확대·지정하고 그 기능을 개선·운영할 계획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전담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등을 확대하여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위해 해당 시군,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 진료권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이 확대·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경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대해 건의한 바 보건복지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의 지정·확대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경북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도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병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중호 의원입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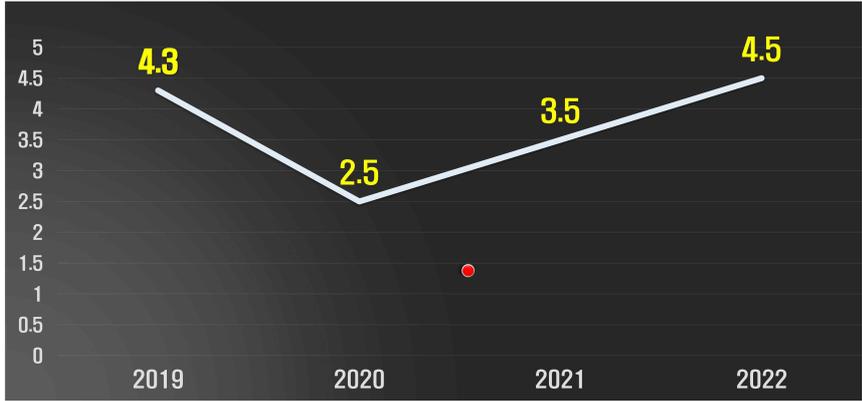
본 의원에게 제34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럽게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낸 피해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① **최근 3년간 국내여행일수 증가 추이**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2023 상반기)

엔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으로 하향된 이후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3월 도지사께서 2030 경북관광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도지사께서 구상하시는 2030 경북관광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전략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북의 관광정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② 2023년 경북도 문화관광체육분야 22개 시군 예산배정 현황



경북도의 2023년 문화관광체육 관련 예산 가운데 시군에 대한 보조금 편성 내용을 보면 총 875억 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경주와 안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북 제1의 문화관광도시 경주와 안동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두 곳을 찾는 관광객 수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경북은 경주와 안동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경쟁력이 있는 관광요소들이 각 시군에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 북부권의 관문이면서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과 함께 소백산을 품은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웰니스 관광지로 추천한 국립치유원, 국가민속문화재이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는 무섬마을 등 역사가 안겨준 다양

한 전통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선비세상과 선비촌, 고택 등 관광콘텐츠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서로 같이 지내는 산’이라는 뜻으로 ‘동지산’으로도 불리는 소백산은 영주시 순흥면과 단양군 가곡면에 위치하면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절경을 선물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그러나 같은 산을 가운데에 두고 충청북도가 바라보는 관광지로서의 소백산의 가치와 우리 경북도가 관광지로 바라보는 소백산의 가치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북도가 단양군에 대하여 편성한 관광정책 관련 2023년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247억, 영주시는 37억 원 정도에 그칩니다.

참고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영주시의 관광예산이 인구가 3만도 안 되는 단양군의 약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산이 쓰인 질적인 면에서도 단양은 시설 위주 투자가 많고 영주는 프로그램 위주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

이 많습니다. 도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 노력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단양과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참으로 다릅니다. 영주시민들조차 단양 관광 인프라와 지원정책 등에 대해 극찬을 하니 영주시의 관광정책 관계자들이 숨을 곳을 못 찾을 지경입니다.

이런 많은 투자의 차이가 해마다 쌓여서 지금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영주를 경북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영주시는 올해 초 영주시 관광개발단을 출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다목적댐은 2016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문화재 이전 및 복원사업 일부 지연에 따라 준공에 차질이 생겨 국가권익위의 중재로 최근에 극적으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등 댐 주변의 공익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도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 패러글라이딩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해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해 낼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조금 더 되는 거리에 자리하면서 자연과 역사가 준 차원 높은 유산을 보유한 영주시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영주시가 추진 중인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단양군과 마주하고 있는 소백산 관광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구체적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악산 국립공원과 지리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해당 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전남은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⑤

마구령 터널 공사 구간



내년 6월이면 2016년 8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장장 8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어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에서 소백산을 넘어 위치한 남대리를 직선으로 험준한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마구령 터널공사가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⑥

지방도 935번 도로 마구령 구간 (현재)



지금까지 935번 지방도 마구령 구간은 해발고도가 820m에

달하고 험준한 고갯길과 농로 수준의 노폭, 급경사 등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지역주민들 소수만 이용할 정도로 불편한 도로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차단된 도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 강원 영월군과 충청북도 단양, 경북 영주로의 접근성이 월등하게 개선됩니다. 경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경상북도로 진입하면서 보이는 첫 이미지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터널의 개통으로 강원도 영월 김삿갓면과 충북 단양 영춘면에서 경북도 영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주 도로로서 지방도 935번 도로의 역할은 이전과 달리 너무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터널을 빠져나와 영주 도심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현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⑧ 지방도 935번 도로 진우-부석 구간 도로 (현재)



이 구간은 부석면에서 영주 도심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은 많은 반면, 왕복 2차선의 구불구불한 선형, 협소한 노폭에 갓길도 없으며 민가마저 인접해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매우 열악한 도로입니다.

협소한 노폭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위험을 늘 겪고 있으며, 최근 민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 역시 보행로가 없어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형개량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 11km 구간의 선형개량공사 사업이 2020년부터 구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계획상 특정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선형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를 통해 부석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강원과 충북의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

그리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의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영주시민을 포함한 우리 경북도민들 또한 충북과 강원을 방문할 시에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와 마구령 터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난 5월 4일에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부석사의 관람료가 면제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향후 병목현상은 불보듯 뻔하며, 사고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주에는 부석사 외에도 소수서원, 무섬마을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소백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생태자원 등 무수히 많은 관광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영주시의 관광발전지수는 2017년, 2019년, 2021년, 3년도 모두 전체 시군의 평균 수준도 안 됩니다. 특히, 세부영역인 관광인프라 분야 중 교통 부분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2021년에는 6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영주의 관광발전을 도로교통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로 선형 개량의 경우 한번 준공되면 향후 수십 년간 손대기 힘든 SOC 사업인 만큼 미래를 내다본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북도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지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인 관문 도로 역할을 할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선형개량이 전 구간에 걸쳐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이와 함께 왕복 2차선이 아닌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

다.

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



피해현황	2,945억원(영주422, 문경543, 예천983, 봉화805, 기타192)
인명피해	사망 26명(예천15, 영주5, 봉화4, 문경2), 실종 2명(예천2), 입원 6명
사유시설	619억원(영주118, 문경69, 예천156, 봉화235, 기타41)
공공시설	2,028건 2,326억원(영주304, 문경474, 예천827, 봉화570, 기타152)

6월 27일에서 30일, 7월 9일에서 19일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많은 도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수해로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26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2명의 주민은 아직 생사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수색에 나선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연이은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⑪

태풍 힌남노 피해 및 복구 현황



피해현황 2,045억원(영주422, 문경543, 예천983, 봉화805, 기타192)

인명피해 사망11(포항10, 경주1), 이재민(5.054세대, 10,001명)

사유시설 238억원(포항138, 경주96, 기타4)
※ 주택 4,924동(전파 21, 반파 43, 침수 4,860)

공공시설 공공시설 : 1,807억원, 1,269개소
(도로 111, 하천 405, 소규모등 753)

복구사업 추진현황(2023.8. 현재) [완료율 - 72%]
· 공공시설 1,269건 중 설계 중 22건, 공사 중 340건, 준공 907건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는 포항, 경주 등 경북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눈이 왔을 때 태풍 힌남노가 남긴 피해복구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경북의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13곳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산사태 대응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지사께서 선진형 풍수해 예방과 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응대책 수립 모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복구를 위한 대표적 예산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피해주민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게 됩니다.

12 농업부문 재해 복구지원 기준						
구분	지원항목	품목	규격	단위	단가	비고
직접 지원	농작물 (보조100% *100%)	농림작물	일반작물	ha	74만원	지원액 = 단가 × 피해면적
			채소류	ha	240만원	
			과수류	ha	249만원	
			과채류	ha	1,572만원	
		농작물	일반작물	ha	380만원	
			채소(과채류)	ha	884만원	
			과수(과채류)·과과	ha	1,766만원	
			과수(과채류)·배	ha	526만원	
			원목우사	10a	1,300만원	
			유우사	10a	1,580만원	
	대피대 입식비 (보조50% *300%, 용자30, 자부담 20)	우사	육계사	10a	1,831만원	
			반식우사	10a	4,126만원	
			비육우사	10a	2,713만원	
			육성우	마리	200만원	
		입식	육성우	마리	1,102만원	
			쇠고기	마리	611원	
			개량종(1군)	군	140만원	
			개량종(2군)	군	250만원	
			내재해량: 10·단 등 5	660㎡	829만원	
			농약 잔해량: 10㎡ > 6㎡	동	2,072만원	
농업용 시설복구 (보조35% *2400%, 용자55, 자부담10)	장고등	농약 잔해량(3~6㎡)	동	5,736만원		
		내재해량(장제시(식민지))	ha	4,700만원		
	인삼재배시설	평바 시설배사	250㎡	100만원		
		관상배사	250㎡	3,775만원		
	비식 재배사	간이재배사	250㎡	1,875만원		
		다시실	ha	2,057만원		
	과수재배시설	지수시설	ha	2,963만원		
		유실	ha	5,136만원		
	농경지 복구 (보조60% *400%, 용자30, 자부담10)	매물	ha	2,271만원		
		생계비 (보조100%)	농가단위 피해율 50%	4인 가구	162만원	
간접 지원	영농자금	농가단위 피해율 30~50%		1년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2년		
	상환연기·이자감면	농가단위 피해율 50%		일반고·습지역	439만원	
		농가단위 피해율 50%		일반고·습지역	439만원	
고교생직자금면제 (보조100%)	농가단위 피해율 50%		일반고·습지역	439만원		
재해·난민지원금	농가단위 피해율 50%		대중기간 1년 (농민지원 1년, 과수·과채류 3년)	연장기간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력 지수와 재해예방 노력지수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복구비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8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일 뿐 피해복구비 자체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피해보상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시설 복구 지

원에만 치중된 제도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선포되지만 하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경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완전복구비용은 물론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도 현물로 지급하고 영농시설도 재해보험에서 보상이 제외된 농기계를 포함한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경북도가 이번 태풍 카눈 상황에서 보여 준 선제적 주민대피 등 기민한 대응은 고무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이 입은 피해지원과 복구대책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주민의 아픔을 달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사태 등 수해피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은 최근 매년 수해피해를 입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복구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도내 영유아와 인성교육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질문)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져오는 역기능인 물질만능주의, 생명경시, 도덕성 상실은 (앞서 존경하는 황명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교권침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점차 심각해지고 많은 위기 학생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이 미흡한 데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공교육의 본질적 사명이기도 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취지하에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학교 교육과 인성교육을 연계하는 온(溫)마음 채움, 인성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온(溫)마음 그림, 학부모·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온(溫)마음 더함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것이며, 인성 교육의 시작은 가정과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자아의식이 형성되어지는 영유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어른이 되고 도덕성과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져 버리면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인성”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내 영유아 아이들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부모의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지지와 교직원과 교육관계부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일례로 경기도는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대구시의 경우, ‘학교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을 선포하고 교직원, 종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대시민 협약식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북의 경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개별 유치원에만 맡겨둘 뿐,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전무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성교육에 관한 철학과 견해는 무엇이며, 경북도 교육청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또한 이를 통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만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경북도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도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민만을 바라보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에 앞서 되는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임병하 의원님, 전문가로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사태, 수해대책,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 계획,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고 지방소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은 정책대안을 주시고 특히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은 경주, 안동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도 자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을 과감하게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류 때문에 대구경북신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최고 관광객이 1700만 외국인인, 그런데 3000만 이상 되는 것은 쉽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관광수요에 대비한 자원 개발, 그다음에 관광호텔 건립, 리조트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에 대한 관광자원도 충분히 고려하고, 담당 국장이 그것은 답변을 좀 드리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충남도지사가 전원 지원해 주겠다. 우선 50% 먼저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50% 준 적도 없고요.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파손되어도 18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 900만 원이었거든요, 집이 완파되었을 때. 그런데 포항 지진 때 1800으로 올렸고 이번에 그것을 또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파되었는데 3000~4000만 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것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올진 때는 한 1억 2000까지 지원했습니다, 완파. 어떻게 했느냐?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부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힌남노 때나 지금이나 공공시설의 복구는 나라에서 합니다, 공공시설은.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100% 보수를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재해구호기금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농산 물피해만 해도 적어도 한 700~800억,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그러면 서리 내리고 낙과가 있었고 또 다른 병으로 생기는 그런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개인 피해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국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지사는 제가 볼 때 뒷감당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구를 뭐 하는 것이 아닌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다 지원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 저도 가 보면 다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따지고,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이것은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되지, 그냥 여기에서 막 하다가 ‘그러면 앞에서 재난 입은 것은 어떻게 할래?’ 앞에서 입었던 재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로서 정말 해 주고 싶지만 많이 검토를 하겠다, 그 말밖에 답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재난현장에 가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이 재난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대책과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에 오셨을 때 당초에는 산 바로 밑에 집 몇 채 무너지는 것,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산은 2km, 3km 밖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큰 바위와 큰 나무들이 내려와서 온 동네를 축대밭으로 만들었느냐? 그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피가 최고다. 어느 지역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에 산사태 위험지역은 거의 사고 안 났습니다. 위험지역이 아닌 500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던 지역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피를 시켜 놔

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큰 문제다 이거예요. 야간에 어제 비가 많이 왔고 그저께도 많이 와서 “오늘 비가 많이 온다니까 대피를 시켰다.” “대피시설이 무너졌을 때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지역의 대피 마을회관, 이것을 특별히 한번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설계하고 직접, 이것은 개인업자들이 짓지 말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 지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재난 대피마을, 그러면 그 지역의 마을회관에 갔을 때 방 하나, 방 2개 정도 있으면 노인하고 전부 어린애하고 다 있을 때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지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설, 어떻게 안락하게 지내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제가 많이 느낀 것은 대피한 분들이 체육관에서 텐트 속에 있으니 잠을 못 잡니다. 또 화장실 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 더울 때 목욕도 못 하고. 우리가 선진국 됐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울진의 산사태 때 그분들을 울진호텔로 다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여기 체육관이 너무 편하다.” 우리 국민들이 하도 수난당하고 어렵게 살아서 삼시 세끼 밥만 해 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한 국민입니다.

“여기 너무 편한데 왜 그 호텔에 가라 하느냐?” 그래서 호텔로 모셨더니 처음에는 잘 안 가려 하다가 처음에 제가 젊은 분들을 설득해서 갔는데 나머지 이틀 해서 짝 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불 때 잘 피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호텔이

잘 없는지 모텔에 모시고, 또 예천에서는 우리 도립대학교 기숙사로 모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농기계도 전혀 보상이 안 됐는데 농기계 보상을 한다든지, 지금도 보상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이 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는,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의연금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의연금도 제가 그래서, 헌남노 때 포항의 독지가가 100억을 냈는데 실제로 포항에서 받은 것은 15억밖에 못 받았어요, 다 국가 전체로 나누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정해서 가는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헌남노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복구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고쳐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먼저 설계를 하고 국가에서 결정이 되면 설계 변경하는 형태로. 그러면 3, 4개월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에 대해서는 조직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을 잘 만들었는데 그것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과 다른 국을 합쳐서 대규모로 만들고, 지금 소방본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방이. 소방과 함께 엮어서 정말 재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모범을 보이겠다. 곧 발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TF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좀 자

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및 소백산 관광 관련 경북도의 지원 계획,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TF팀 구성 등 도 차원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광은 특정 지역에 인구와 각종 자본 유입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입니다.

지난 '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경북을 방문했을 때 우리 경북을 가리켜서 “한국 속의 한국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경북은 풍부한 문화자산과 강·산·해 등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3월 16일 국내 관광객 1억 명, 외래 관광객 10%를 경북에 유치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는 소백산국립공원, 부석사, 소수서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관광거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6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영주시 등과 협력해서 영주시 관광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1694억 원을 투입하여

선비세상을 조성했고, 관광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선비촌, 고택 리뉴얼, 체험시설 개선, 대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영주시와 협력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웰니스 관광지에 국립산림치유원, 소백산생태탐방원 등을 연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영주 관광의 이미지도 제고했고 또 국내 최초로 도 주도로 도가 주최하는 경북 참 웰니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주의 대표 축제인 선비문화축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는 도 지정 축제로 지정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에서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 도, 영주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서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17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풍기인삼의 세계화와 산업화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관광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광 발전의 새로운 틀과 협력 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영주시, 전문가, 또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국립공원 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케이블카는 관광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영, 사천 케이블카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고,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22년 기준 연 127만 명,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블카는 관광 산업 전반에 큰 시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전국에 케이블카는 약 50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울릉군, 금오산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영덕, 포항에는 해상케이블카를 신규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케이블카는 확대 설치도 이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 제안처럼 현재 한 100만 명 가까이 찾는 소백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비약적인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와 경제적 타당성 등의 이유로 영주 케이블카가 한 두 차례 정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가능해졌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오랜 기간 담보 상태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을 포함해서 국내에 한 10여 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영주시의 노력 등을 통해서 최근에 개인 소유 농지 1750km²가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호적인 환경도,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도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선의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민자 유치에 조금 애로가 있고, 시민의 전폭적인 공감대 형성도 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제안대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영주시 등과 협력해서,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TF팀도 좀 구성을 해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본 구상 마련, 민자 유치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백산을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명품 랜드마크로 조성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백산국립공원하고 영주댐 일원 관광 자원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10만 영주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주 다목적댐이 최근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백산하고 연계해서 영주댐 일원을 수변, 생태관광 명소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우리 영주시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총 24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 안향 기념공원, 부석사 관광지 조성, 죽계구곡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영주댐 준공에 발맞추어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해 왔고, 총 65억 원을 투입

했습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런 기반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지금 준비기간을 거쳐 한 2, 3년간 총 120억 원을 투입해서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라인, 스카이워크, 에코슬라이드 등을 조성해서 차별화된 수변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7월 사업계획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영주시의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댐을 문화, 건강, 스포츠 산업을 아우르는 명품 관광댐으로 만들어서 개발과 보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속 가능한 명품 관광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영주는 물론 경북 북부권은 세계유산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생태 자원을 보유한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입니다. 영주와 더불어 경북 북부권 시군,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협력을 통해서 권역 내 풍부한 웰니스 자원을 바탕으로 시군별, 권역별,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관광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관광 자원인 소백산과 부석사, 소수서원 등 세계유산과 민속문화재인 무섬마을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진 영주시가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박동엽입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지방도 935호선 선형개량 및 왕복 4차로 확장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지방도 935호선 선형개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35호선은 전체 16km 중 선형개량이 시급한 구간은 부석면 감곡리~삼석리 구간으로 연장은 4.36km입니다. 사업비는 126억 원이며,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 6.24km는 2026년~2030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분석 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지역은 영주시 관리 구간으로 전체 5.4km이며, 이중 진우 구간 1km는 선형개량을 기어 완료하였습니다. 상망~진우 구간 1.0km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km는 조기에 추진토록 영주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로 확장 포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망동~부석면 구간은 총 연장이 16km이며 4차로 사업비는 3616억 원이며, 영주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소백산국립공원으로 가는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상망동 부석 구간의 4차로 확장을 위해 2021년~2025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분석 등을 검토하였지만 교통 수요가 적어 4차로 확장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주시 상망동에서 부석면 구간의 교통량은

영주시에서 관리 중인 상망동 구간은 하루에 6979대이고, 우리 도에서 관리 중인 부석면 구간은 3951대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에 의하면 4차로 확장 기준 교통량은 1일 7300대이므로 현재 통행 중인 교통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총사업비 1218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국가 지원 지방도 28호선, 단산~부석사 간 도로건설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마구령 터널을 이용하여 강원도 영월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상망동 부석면 구간 관광객 증가 등 교통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26년~2030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도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4차로 확장 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II. 5분 자유발언

《 제341회 임시회(2023년 9월 12일) 》

□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의 기구입니다.

비전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달성

목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

혁신 디지털경제, 무역 투자,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오늘 저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의 개최가 확정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상북도 경주 유치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현황 (21개국)



3.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역대 개최지

회차	일시	개최국	개최도시	비고	회차	일시	개최국	개최도시	비고
제1차	1993.11.20	미국	시애틀		제16차	2008.11.22.-23	페루	리마	수도
제2차	1994.11.15	인도네시아	보고르		제17차	2009.11.14.-15	싱가포르	싱가포르	수도
제3차	1995.11.19	일본	오사카		제18차	2010.11.13.-14	일본	요코하마	
제4차	1996.11.25	필리핀	수빅		제19차	2011.11.12.-13	미국	호놀룰루	
제5차	1997.11.24.-25	캐나다	밴쿠버		제20차	2012.9.8.-9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제6차	1998.11.17.-1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수도	제21차	2013.10.7.-8	인도네시아	발리	
제7차	1999.9.12.-13	뉴질랜드	오글랜드		제22차	2014.11.10.-11	중국	북경	수도
제8차	2000.11.15.-16	브루나이	반다르스리 베가완	수도	제23차	2015.11.17.-18	필리핀	마닐라	수도
제9차	2001.10.20.-21	중국	상하이		제24차	2016.11.19.-20	페루	리마	수도
제10차	2002.10.26.-27	멕시코	로스까보스		제25차	2017.11.10.-11	베트남	다낭	
제11차	2003.10.20.-21	태국	방콕	수도	제26차	2018.11.17.-18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수도
제12차	2004.11.20.-21	칠레	산티아고	수도	제27차	2020.11.12	말레이시아		화상회의
제13차	2005.11.18.-19	대한민국	부산		제28차	2021.11.8	뉴질랜드		화상회의
제14차	2006.11.18.-19	베트남	하노이	수도	제29차	2022.11.18.-19	태국	방콕	수도
제15차	2007.9.8.-9	호주	시드니		제30차	2023.11.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다시피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의 개최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엄청난 지역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4.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효과 전망

(단위: 억 원, 명)

경북지역			전국		
생산 유발	부가가치	취업 유발	생산 유발	부가가치	취업 유발
9,720	4,654	7,908	18,863	8,852	14,438

- 경상북도 2025 APEC 유치에 위한 기본방향 및 지역효과 분석, 대구경북연구원, 2021

한 조사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경북은 9000억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5000억에 달하는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8000여 명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는 그 2배의 효과를 창출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유치경쟁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은 경주와 부산, 인천, 제주로,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 세 곳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APEC 유치를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경북도의회 33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실 있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 이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의원들의 발언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것으로 넘기는 것을 관행으로 일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시는 물론 인접도시 포함을 비롯하여 경북 전체로 경제효과를 확대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철우지사님.

도민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에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번 유치전에 대해 너무나도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물론 경상북도 모든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경북 경제와 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영숙 경제산업국장님, APEC 정상회의 유치 업무에 주무국장님으로서 반드시

경북에 유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경제 관련 분야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면 이런 노력의 선제적인 조치야말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경상북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APEC 정상회의 유치가 지역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장인 만큼 지역 컨벤션 및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통해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대형 국책사업 유치 공동협의체 내 APEC 정상회의 경북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는 12월 유치 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바로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북이며 그 가운데에서 경주가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의원의 발언을 또다시 관행처럼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2025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상북도 경주'라는 슬

로건으로 우리 경북이 반드시 유치하여 경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두영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3년 청년정책 정부평가에서 경북도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지고 경북도가 청년창업 정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 창업지원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청년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

최근 2년간 현황(2021-2022)

총 지원 예산: 162억 여원

총 지원 사업수: 14개

총 지원 기업수: 693개 기업

경북도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14개 지원사업에 총 16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93개의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한 기업당 2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2023년 현재 633개 기업만이 생존하였고, 기업당 평균 연매출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예산을 지원받은 청년창업기업의 옥석을 선별해 제대로 된 성장과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창업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창업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최근3년간, 2021년~2023년 8월 기준)

NO.	연도	지원사업명	총예산 (백만원)	사업종류 (예비/초기/도약)	지원금 (백만원)	총지원수 (기업수/개)	2023년 기준 유지기업	평균매출현황 (백만원)
1	2021년	청년창업 지역정책 지원사업	1,664	예비	20	41	37	2
2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	900	초기	12	40	36	163
3		경북 청년CEO 재도약 지원	100	예비 / 초기	15	5	5	306
4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사업	605	초기	12	20	20	232
5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2,180	예비 및 초기	12	152	121	35
6		청년창업 지역정책 지원사업	1,664	예비	20	40	38	20
7		경북청년 창업드림 지원사업	2,558	예비	25	55	50	3
8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920	예비	15	41	34	11
9		경북 청년 두배로 성장 지원사업	1,295	도약	15	70	69	939
10	2022년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	900	초기	15	40	39	133
11		경북 청년CEO 재도약 지원	100	예비 / 초기	15	5	5	299
12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사업	605	초기	15	20	20	159
13		스마트제조 청년스튜디오	562	도약	15	26	26	292
14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2,180	예비 및 초기	12	138	133	25
15	2023년	청년창업 지역정책 지원사업	1,325	예비	20	38	38	1
16		경북청년 창업드림 지원사업	2,152	예비	25	67	61	3
17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925	예비	15	51	51	11
18		경북 청년 두배로 성장 지원사업	1,390	도약	21.6	38	38	1,305
19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	1,000	초기	15	45	45	133
20		경북 청년CEO 마일스톤 지원사업	173	도약	25	5	5	656
21		예비창업패키지	1,838	예비	50	30	23	0
22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사업	605	초기	15	20	20	67
23		스마트제조 청년스튜디오	462	도약	24	15	15	229
24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2,180	예비 및 초기	12	144	144	4

표에서 보듯 최근 3년간 경북도의 24개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 도약형 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154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기업당 지원금은 평균 25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기업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의 수와 기업당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도약형 지원사업을 확대 발굴·지원하여 경북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이 도내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창업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사업을 단순 보조 형태에서 청년창업기업 스스로 투자유치나 매출 증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등이 결합된 융·복합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사업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도 자신감 있게 청년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그 마중물이 될 지역 기반

청년창업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민간 투자 역량을 확대하여 민간자본이 청년창업 생태계에 유입되어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지원 방식도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시대는 지자체 간의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이며 특히 청년창업기업의 육성은 도내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과 투자유치 등이 결합된 융·복합 형태의 투자생태계 조성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사랑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134만t이 넘는 오염수가 향후 약 30년 동안 태평양으로 방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를 제안드리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현장성 확보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유통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의 포항농수산물검사소에서 이루어 집니다.

① 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개요					
대상	농수산물(유통, 학교급식), 가공식품 등				
내용	방사능 오염도 검사 및 모니터링				
검사항목	세슘, 요오드				
최근 5년간 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건수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자체검사)	233건	342건	433건	445건	546건

출처: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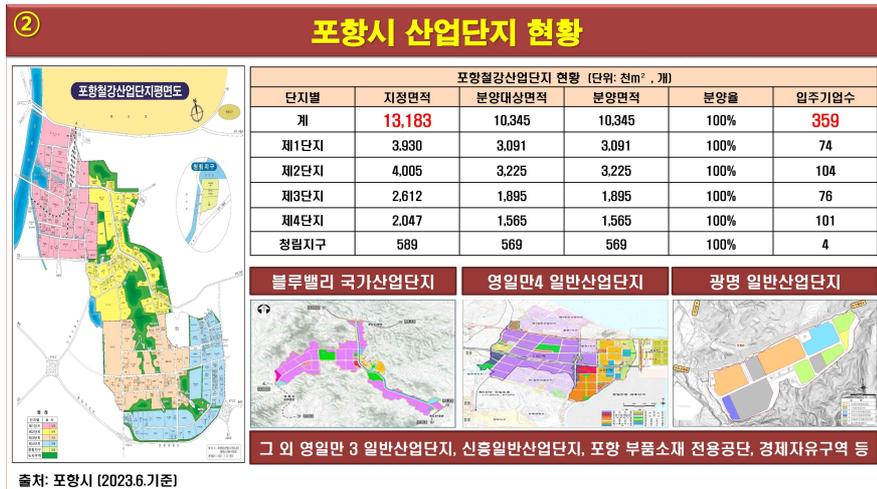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오염도 검사 건수는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 233건 대비 2022년 기준으로 무려 133%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로 무엇보다 자체 검사 확대와 추후 검사의뢰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는 무엇보다 신속성과 현장성을 요합니다. 분석장비로 이루어지는 실제 검사는 2시간 40분이면 완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료채취와 수거, 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적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수산물은 이미 도민의 식탁에 오른 뒤로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천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포항까지의 거리는 약 46km에 남짓합니다. 하지만 포항은 경북 동해안 지역 중심지이며 울진과 영덕·포항·경주·울릉 지역 수산물의 방

사능 오염 검사를 한데 아우르고 적시에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조차 향후 검사장비를 72대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하고 검사 속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정부기조에 맞추어 수산물 이 반입되는 현장에 검사기관을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검사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기관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과 수질 등 환경적 검사 수요 증가입니다.

포항시는 약 400만 평 규모에 359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철강산업단지를 비롯해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벨리 국가 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오염 검사, 수질 검사 등 환경 검사 수요 또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 정책 추진과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③ **감염병 및 식의약 검사 시군 의뢰 검사 건수 현황**

2022년 식의약 의뢰 검사 현황 (단위: 건)

구분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	농수산물	계
22개 시군	1,991	190	185	259	2,192	4,817
포항시	279	36	18	53	696	1,082

2022년 감염병 의뢰 검사 현황 (단위: 건)

구분	에이즈	잠복결핵	식중독	코로나19	CRE	기타 바이러스성	기타 세균성	계
22개 시군	120	3,654	1,053	90,173	916	87	1,043	97,046
포항시	32	558	275	40,627	337	34	135	41,998
북부지역 11개 시군	53	912	298	24,090	221	21	474	26,069

출처: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셋째, 감염병과 식의약에 대한 검사 건수가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2022년 기준 포항시의 식·의약 검사 의뢰 건수는 1082건으로 경북도 전체의 22.5%에 달합니다. 감염병 검사는 약 4만 2000건으로 도 전체의 43.3%나 차지합니다.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검사 의뢰 건수를 모두 합한 2만 6000건을 훌쩍 상회하는 수준으로 포항시의 수요가 월등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기관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금은 온 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불안과 갈

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위기와 불안의 시대일수록 도민 안전의 든든한 대책 마련으로 경북도의 단단한 대응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안전 문제를 검증하는 데 도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바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포항 설치입니다.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를 촉구하면서 이상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형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금번 호우피해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이주민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유독 많은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예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심할 시간조차 없었던 피해 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도민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지개정법에 따른 농지 취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농민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촉발된 'LH 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1년 농지법을 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심사와 사후 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폐지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개정 농지법은 ‘경자유전’, 투기 우려라는 프레임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주말·체험영농 수요를 감소시켜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오히려 농촌으로 인구 유입을 막아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개정 농지법은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의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거래량은 농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까다로운 농지 취득 제도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7만 5000여 필지에서 농지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6만 3000여 필지로 16% 감소했으며,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5만 4000여 건에서 2022년 4만 2000여 건으로 22% 감소하여 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사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오히려 지역의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며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규제 강화를 일괄 적용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행 농지법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

을 떨어뜨리며 균형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
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통한 농민들
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
에 적극 나서도록 경상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종호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경북신공항이 경북의 중차대한 미래를 결정짓는 과업으로써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활주로 방향과 지역산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후보지 선정당시 활주로 위치도 도의원 **윤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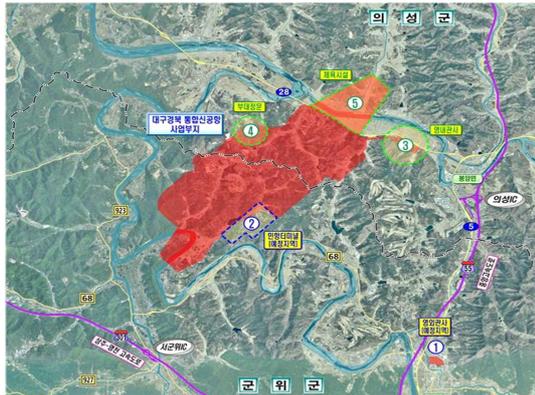
*출처: 경상북도 보도자료(22.8.18(목))

2022년 8월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활주로 방향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3년 8월 대구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발표한 활주로의 방향은 신기하게도 기본계획과 2020년 공동후보지 선정 때와도 같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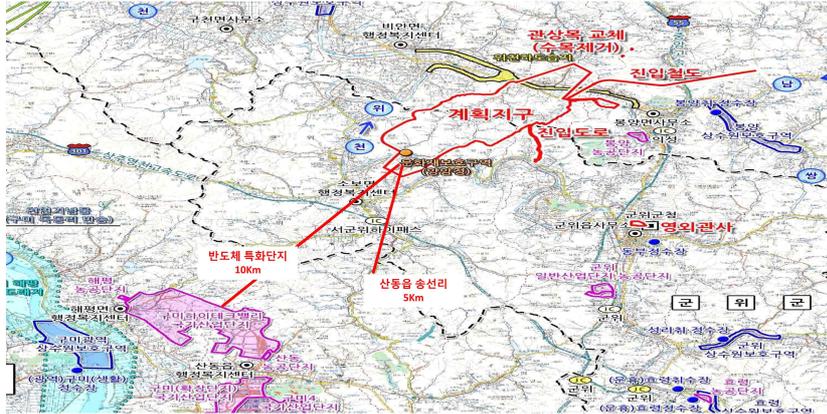
기본계획 위치도

도의원 **윤종호**



*출처: 경상북도 보도자료(22.8.18(목))

통상적으로도 군공항의 활주로 이착륙 방향을 결정짓는 데 고려되는 것이 공역, 기상, 소음 영향, 작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의 방향은 기본계획에서 그 틀을 설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으로 이착륙 방향이 안정적이라고 입증되어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조안)요약문, 대구광역시(23.8.)

애초 협의한 후보지와 기본계획, 영향평가까지 수정 한 번 없이 같은 방향이 결정된 것은 처음부터 고려된 부지에 기본 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짜 맞춰 최적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신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올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진동과 먼지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으며, 현재 확정된 활주로 방향은 특화단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24시간 나노미터 단위 공정의 반도체를 양산하는 기업에 상당한 생산성 저하와 불량률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며, 이것은 경북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의 동력 상실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의 소음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0km 떨어진 장봉도는 제4활주로 개통 이후 3분마다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소음 지옥의 섬’으로 불릴 만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항기도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데 군공항은 오죽하겠습니까?



*출처: 매일신문 (2018.7.29)



*출처: 인천일보 (2018.8.27)

대구공항은 연간 20만 건 이상의 소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공군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전국 군공항 중 소음 분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누적 소송 판결액은 4180억에 달합니다.



이처럼 소음에 민감한 활주로 방향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계획 위치는 소음 분쟁이 심한 기존의 대구공항과 약 90도 가까이 꺾인 반대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대로라면 대구시의 산업단지와 주거지에는 소음 영향이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입장에서 활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과 주거밀집 지역을 직격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에 따른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부른 판단으로 우리 도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기업과 지역민의 정주여건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알려진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활주로의 방향은 한 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특화단지과 주거밀집 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히 이의를 제기하여 반드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비전 제시 및 도민의 실익 확보 촉구입니다.

최근 대구시의 일방적인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를 두고 의성군민의 강력한 반발과 신공항 협조 불가라는 극단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대구시장은 지난 4일간 부회의를 통해서 의성의 민심을 달래듯 “모든 물류 시설을 의성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장은 화물터미널 이외의 모든 항공 물류라는 단서를 달아 결국 화물터미널을 대구시 군위군으로 확정을 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말로만 대구경북신공항이라 한 것은 아닌지, 신공항에 경상북도의 계획과 정책이 담긴 청사진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위군은 민항, 대구 편입 등 의성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신공항과 관련된 사업의 주도권은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가 결정하는 대로 경북은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

니까? 대구로서는 당연히 자기 동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의성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향후 예정된 후속 사업들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 지금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경북도민의 우려를 새겨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신공항의 완공까지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으로 260만 경북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편에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경민 의원 외 22명('23. 8. 17.)
-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배진석 의원 외 28명('23. 8. 17.)
-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23. 8. 29.)
-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선희 의원 외 15명('23. 8. 17.)
-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구 의원 외 18명('23. 8. 17.)
-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호 의원 외 26명('23. 8. 17.)
- 만 나이 준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23. 8. 17.)
-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최태림 의원 외 12명('23. 8. 17.)
-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박선하 의원 외 14명('23. 8. 17.)
-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원석 의원 외 19명('23. 8. 17.)
-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황명강 의원 외 23명('23. 8. 17.)
-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 외 41명('23. 8. 17.)

-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김홍구 의원 외 27명('23. 8. 17.)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채아 의원 외 16명('23. 8. 17.)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범 의원 외 18명('23. 8. 17.)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숙 의원 외 29명('23. 8. 17.)
-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 의원 외 21명('23. 8. 17.)
-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병하 의원 외 23명('23. 8. 17.)
-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3. 8. 17.)
-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이철식 의원 외 11명('23. 8. 17.)
-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황재철 의원 외 10명('23. 8. 17.)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홍열 의원 외 17명('23. 8. 17.)
-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영숙 의원 외 10명('23. 8. 17.)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석영 의원 외 19명('23. 8. 17.)
-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병근 의원 외 16명('23. 8. 17.)

-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남진복 의원 외 9명('23. 8. 17.)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우청 의원 외 9명('23. 8. 17.)
-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채아 의원 외 11명('23. 8. 17.)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박채아 의원 외 10명('23. 8. 17.)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차주식 의원 외 28명('23. 8. 17.)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김홍구 의원 외 25명('23. 8. 17.)
-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종호 의원 외 21명('23. 8. 17.)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황두영 의원 외 17명('23. 8. 17.)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진석 의원 외 25명('23. 8. 17.)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호 의원 외 21명('23. 8. 17.)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교육감('23. 8. 17.)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안건 심의, 발언 등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도내 학교에 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간식, 방문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협조) 의장은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민주의식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해당 직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로부터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

제4조(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청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도지사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과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도지사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

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
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행정지원)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20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제3조제2호 관련)

연번	기 관 명	직위
1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원장
2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원장
3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원장
4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5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6	경북연구원	원장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8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9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원장

※ 위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의회와
도지사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회의) ① · ② (생략)</p> <p>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처 <u>총무담당관</u>이 된다.</p> <p>④ (생략)</p>	<p>제6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의정지원담당관</u>-----.</p> <p>④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위탁·대행의 제한)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회 동의 예외 사무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6.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미만인 사무
7.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②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위탁·대행사무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9조(계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대행사무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등을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를 책임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2조(수탁·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의 부담 등) ①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3. 사업의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실적 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산 및 평가)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상북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등) ①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

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의 소재·셀·팩·배터리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
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조립·분석·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나 경상북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 기관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7.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되는 지원 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창업, 기술·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반 시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경상북도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경상북도경제교
육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경상북도”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회”를 “1회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 도지사는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
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중전의 제9조) 중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을 “경제교육을 실시하는”으로, “재정적 지원을 수행”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으로 한다.

제14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신 설〉</p> <p>1.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2.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4.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5.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반 시책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 5. (생 략)</p> <p>②·③ (생 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생 략)</p> <p>2. <u>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u> <u>도교육청 소속 공무원</u></p>	<p>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① ----- <u>다음</u> <u>각 호의 사항</u>----- ----- <u>경상북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경상북도</u> ----- -----</p>

현행	개정안
<p>3.·4. (생략)</p> <p>⑤ (생략)</p> <p>제8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신설></p> <p><신설></p>	<p>3.·4.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1회 이상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 도지사는 <u>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1.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p> <p>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p> <p>3.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u>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u></p> <p>② 도지사는 <u>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 단체가 <u>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u></p> <p>제10조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u>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 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p> <p>제12조(재정지원) ----- --- <u>경제교육을 실시하는</u> ----- ----- <u>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u>----- -----.</p> <p>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p> <p>제14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u>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u></p> <p>제15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 중에 표기된 “만”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
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滿) 나이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 이상인 자을”를 “65세 이상인 자를”으로
한다.

제3조(「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경
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50세”를 “50세”로 한다.

제4조(「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만 70세”를 “7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만 6세 이상 만 18세”를 “6세 이상 18세”로 한다.

별표 중 “만 70세”를 “70세”로 하고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7조(「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만12세”를 “12세”로 한다.

제8조(「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9조(「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입양 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0조(「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1조(「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지역 농어촌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지역 농어촌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만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 -----.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이며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생략)</p> <p>3. “----- ----- 농업인 중 65 세 이상이며 ----- -----.</p>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상북도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p> <p>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p>	<p>제2조(지원대상) ----- ----- ----- ----- -----.</p> <p>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p>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노인등”이란 경상북도에 주민 등록을 ----- 가. 만 70세 이상인 사람 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제2조(정의) ----- 1. (생 략) 2. ----- ----- 가. 70세 이상인 사람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별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율 (제5조 관련)				[별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율 (제5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만 70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1. 노인	70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아동·청소년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00분의 100(1일 무료횟수 3회)		2. 아동·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00분의 100(1일 무료횟수 3회)	
3. 등록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등록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18민주화유공자	다.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18민주화유공자	다.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의 사고”란 만12세 이하인 사람의 스킨존 교통사고 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5. “그 밖의 사고”란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킨존 교통사고 -----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양지원금)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상해보험 가입비: 실비(만 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정한다)	제6조(입양지원금) ----- ----- -----. 1. (생 략) 2.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정한다)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소년 임신부의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임신부에게 의료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임신부의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 임신부에게 ----- ----- -----.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신청 단계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청소년 또는 보호자(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해당)에게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15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신청 단계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청소년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의 청소년인 ----- -----).</p>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시·도가 상호

협력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4.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정책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방시대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지방시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방시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초광역권을 설정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도와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4.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광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초광역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기회발전특구의 신청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도세의 감면

제7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도내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담당 공무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경상북도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촉진
5.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합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6.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협력, 조사·연구 및 업무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과 위원회 지원

③ 도지사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발굴·추진)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
2. 조사·연구·교육·홍보
3.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4. 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
5. 시·군간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개선과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의 활동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로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및 종전의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및 종전의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지원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제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
3. 드론 활용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걷기포인트”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통한 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걷기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걷기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
3.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4. 걷기포인트 지급 및 관리
5. 각종 행사의 걷기 사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6.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걷기포인트의 지급) ①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걷기포인트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걷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걷기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걷기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걷기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리더”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출생 또는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지도·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 수립·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과 민간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4.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아성찰, 윤리 의식 함양, 소통 전략 등 여성리더 인성 교육
2. 소그룹 연구 활동, 강연 및 토론 등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 확대
4.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및 구축
5.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상
북도 소재 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와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과대학(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
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치를 위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대학교(이하
“지역대학교”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 관련 민·관·산·학 등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 등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 비율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때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지역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관계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교육부장관의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경계지역 및 경상북도 내 시·군 경계지역 발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시·군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읍·면·동을 말한다.
2. “시·군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 경계지역 주민”이란 도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도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4.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경상북도 내에 서로 경계를 접

하고 있는 시·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군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도 경계
지역 및 시·군 경계지역(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이 소외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되는 경계지역에 관한 문제
해결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지역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경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방향
2. 경계지역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제5조에 따른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계지역 현황과악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2. 주민소득 창출사업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
4.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사업
5. 경계지역일 경우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의 연계협력 추진사업
6. 그 밖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제5조(경계지역별 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에서 낙후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으로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① 경계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계지역 정책 추진 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경계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계지역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관한 시책개발과 시행을 강화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 가. ‘경계지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수립하도록 신설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나.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신설 규정함(안 6조제3항 신설)

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등, 현지 조사를 삭제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라. 그 밖에 선행조문 수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11조(위탁 및 대행), 제12조(지원),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4조(시행규칙)→제7조(위탁 및 대행), 제8조(지원),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시행규칙)]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협의”를 “심의”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한다.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10조는 삭제하고,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를 안 제7조, 안 8조, 안 제9조, 안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 ②(생략)</p> <p>③ <신 설></p>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한다.</p>
<p>제6조(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p>1. ~ 4. (생략)</p> <p>③ <신 설></p>	<p>제6조(위원회)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심의-----.</p> <p>1. ~ 4.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한다.</p>
<p>제7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경계지역 발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p>	<p>제7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삭제)</p>

원안	수정안
<p>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 나. 경상북도 경계지역 시·군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계지역 전문가 등</p> <p>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경계 지역 특수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분 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 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p>	<p>제8조(분과위원회) (삭 제)</p>

원안	수정안
<p><u>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④ <u>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u></p> <p>⑤ <u>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9조(회의 및 수당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p><u>제9조(회의 및 수당 등) (삭 제)</u></p>
<p><u>제10조(현지 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u></p>	<p><u>제10조(현지 조사) (삭 제)</u></p>
<p><u>제11조(위탁 및 대행) (생략)</u></p>	<p><u>제7조(위탁 및 대행) (제정안과 같음)</u></p>
<p><u>제12조(지원) (생략)</u></p>	<p><u>제8조(지원) (제정안과 같음)</u></p>
<p><u>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생략)</u></p>	<p><u>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정안과 같음)</u></p>
<p><u>제14조(시행규칙) (생략)</u></p>	<p><u>제10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u></p>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이란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말한다.
7.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연도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

획의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나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기획·일자리·문화·복지·예산 등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⑩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⑪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자료 검토 및 위임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청년정책 평가)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평가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생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경상북도 청년통계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참여단)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2. 지역 청년 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 정착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참여
6. 활동 보고서 발간

7. 제6조제1항, 제12항에 따른 위원회, 청년정책실무위원회
와의 상호 협조

③ 참여단 구성원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
하되 성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
회의를 둘 수 있다.

⑤ 도의 관련 부서는 참여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
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 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능력개발
2.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3. 청년의 창업지원
4. 청년의 생활 안정
5.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6.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
7.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8. 청년의 권리보호
9. 청년의 교류 확대
10. 청년의 정착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청년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시행·종료·평가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하여 청년 활동과 커뮤니티 조직 결성 등 청년공동체 활동과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과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개설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지원 하는 데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의 운영 업무를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 통합 상담서비스 지원
3.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지원
5. 취약계층 청년 발굴,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6. 시·군 청년센터, 대학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7. 청년정책 발굴·연구 및 홍보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년센터의

운영업무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청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함께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하고, 그 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여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청년 발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서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할 때는 제외한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포상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돌봄 시설”이란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험가입 등) ① 도지사는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아이돌보미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8. (생략)</p> <p>9. <u><신설></u></p> <p>제10조의2 <u><신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돌봄 시설”이란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u></p> <p>제10조의2(보험가입 등) ① <u>도지사는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아이돌보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u></p>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란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환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문화이용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
2. 여행 경비 및 스포츠 활동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 사업
2. 여행 및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사업
3.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4.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과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중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 5항에서 “조례에 따른 임
대료”는 100분의 80으로 한다”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② (생략) ③ 충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의7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서 신설></p> <p>④ (생략)</p> <p>제10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 5항에서 “조례에 따른 임대료”는 <u>100분의 80으로 한다.</u></p>	<p>제9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단,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 ----- -----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u>100분의 80을 경감한다.</u></p>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화학물질이”를 “화학물질로부터”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로,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을“(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하게”를 “효과적으로”로, “법 제6조제5항”을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안전관리시책(이하 “안전관리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를 “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시책”을 “화학안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2호)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방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화학안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안전관리시책”을 “화학안전계획”으로, “지역경찰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의 장”을 “경상북도경찰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경상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시달해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안전관리시책”을 “화학안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제3항제2호가목 중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안전관리시책”을 “화학안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 수 있도록”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을 각각 “도민”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7조의2제1호 및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화학사고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방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5조 제1호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은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화학안전계획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사항을 화학안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화학물질이 경상북도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 ① 도지사는 <u>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이하 “안전관리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안전관리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2. <u>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u></p> <p>3. (생 략)</p> <p>4. <u>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제3조(책무) ----- ----- <u>화학물질로부터</u> ----- ----- <u>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u> ----- 수립·시행해야 ----.</p> <p>제4조(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 <u>효과적으로</u> ----- ----- <u>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u>----- ----- <u>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u> ----.</p> <p>② <u>화학안전계획</u>----- -----.</p> <p>1. (현행과 같음)</p> <p>2. <u>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u></p> <p>3. <u>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u></p> <p>5. ----- ----- <u>지원방안</u></p> <p>6. (현행 제3호와 같음)</p> <p>4. <u>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신설></u></p> <p>③ 도지사는 안전관리시책을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u>지역경찰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의 장</u>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p> <p>제5조(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안전관리시책의 수립 및 변경</p> <p>2. (생략)</p> <p>3. <u>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4. (생략)</p>	<p>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화학안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 화학안전계획----- ----- 경상북도경찰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 ----- 통보하고 경상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시달해야 ---.</p> <p>제5조(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p> <p>1. 화학안전계획-----</p> <p>2. (현행과 같음)</p> <p>3.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p> <p>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역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p> <p>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u>경상북도의회 의원</u></p> <p>나. ~ 마. (생략)</p> <p>④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u>사람</u></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p> <p>④·⑤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u>통보해야</u>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p>	<p>제9조(비밀 준수 의무) ----- ----- ----- -----</p>

현행	개정안
<p>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p>	<p>----- <u>제출해야</u> ----- -----.</p>
<p>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u>안전관리시책</u>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도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이 <u>알 수 있도록</u> 제공할 수 있다.</p>	<p>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u>화학안전계획</u> ----- ----- -----.</p> <p>② ----- ----- ----- ----- <u>알기 쉽게 정리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u> -----.</p>
<p>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u>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u>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물·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① ----- <u>도민</u> ----- ----- -----.</p>
<p>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p>	<p>1. ----- <u>도민</u> -----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12조의2(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7조의2제1호 및 법 제23조의4제1항</p>

현 행	개 정 안
	<p>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 (이하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p> <p>② 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화학사고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도지사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방본부에 통지해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p>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맑은누리파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라 한다)”을 “맑은누리파크(이하 “맑은누리파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맑은
누리파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관련
11개”를 “맑은누리파크 관련 10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으로 본다.

제3조(반입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관련 11개 시·군 실시협약에서 정한 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와 맑은누리파크 관련 10개 시·군 실시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상북도 <u>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u>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u>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u>(이하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 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u>환경에너지종합타운</u>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맑은누리파크</u> ----- ----- -----.</p> <p>제2조(정의) ----- -----.</p> <p>1. ----- ----- ----- <u>맑은누리파크</u> ----- (이하 “<u>맑은누리파크</u>”라 한다)-----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u>맑은누리파크</u> ----- ----- -----.</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퍼센트[반입수수료의 기준은 경상북도와 <u>환경에너지종합타운</u> 관련 11개 시·군 실시협약에서 정한 금액(불변가)으로 하고, 해당 시·군 반입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된다]</p> <p>3. (생략)</p> <p>②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맑은누리</u> <u>파크</u> 관련 10개 -----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임산물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7조(현장 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현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안정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운용 및 농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군, 보험사업자,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연안의 건강한 해양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

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태환경 개선사업
2. 바다숲 조성사업
3.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4. 수산종자 방류사업
5. 인공어초 설치사업
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 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산종자의 분양) ①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을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동물보호 민간단체”라 한다)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동물복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의 보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동물 보호·복지

업무 관련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회의 등) ① 동물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동물등록 제외지역) ①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의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도서

2. 시장·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서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으로 고시한 읍·면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등록대상동물의 정보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후 90일령이 지난 개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동물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2. 공중목욕탕, 찜질방
3. 그 밖에 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

제9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두 수를 고려하여 동물 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인력기준 및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동물의 공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건강 및 보호·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구조·보호조치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유실·유기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기증·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기증·분양받은 자의 부담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유실·유기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45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16조(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과학대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되,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유자가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과학대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동물 보호 민간단체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학대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호 및 관리를 하는 동물보호센터, 공수의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구조·보호조치에 든 비용(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41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법 제

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비용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5조제4항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실·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6. 3마리 이상의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3마리째

등록 수수료부터 감경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20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2조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7조의 보호비용 등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제17조제4항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기준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 소요경비는 일반관리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군 실정에 맞게 산출함.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정부 노임 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 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 노임 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 관리사 노임 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 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도지사(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도지사(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
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
고 홍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개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안전성 조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u></p> <p>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 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p>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8. 30.

제안자 : 농수산위원장

1. 수정이유

- 민간감시단의 명칭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목적과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5조의2 제4항 중 “명예 수산물홍보단”을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으로 수정함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 제4항 중 “명예 수산물홍보단”을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u>명예 수산물홍보단</u>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 ----- ----- -----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p>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컨테이너 화물”을 각각 “화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를”을 “국
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을”로 한다.

제4조제2항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이용장려금”을
각각 “항만이용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특정화물유
치지원금 화물이용장려금”을 “특정화물유치지원금은 항만이용
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경우 컨테이너화물이 아닌 화물에 대한 지원의 기준·

규모·기간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화주”란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3의2.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p> <p>〈신 설〉</p> <p>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기간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화물----- -----.</p> <p>2. ----- ----- -----화물----- -----.</p> <p>3. ----- ----- -----화물----- -----.</p> <p>3의2. -----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을----- -----.</p> <p>제4조(재정지원 등) ② (생략)</p> <p>9. 그 밖에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지원기준 등) ① ----- ----- -----</p>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p> <p>4. <u>화물이용장려금</u>은 화물 처리량에 따라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1차 연도는 100퍼센트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순증화물은 100퍼센트, 나머지 처리화물은 50퍼센트를 지원한다. 이 경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각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5. ~ 8.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제1항제4호에 따른 <u>화물이용장려금</u>을 지원받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 볼륨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제6호에 따른 <u>특정화물유치 지원금</u> <u>화물이용장려금</u>에 가산하여 지급한다.</p> <p>⑤ (생 략)</p> <p>〈<u>신 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항만이용장려금</u> ----- ----- ----- ----- ----- ----- ----- ----- ----- ----- -----.</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항만이용장려금</u> ----- ----- ----- -----.</p> <p>④ -----<u>특정화물유치 지원금</u> <u>은 항만이용장려금</u> -----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컨테이너화물이 아닌 화물에 대한 지원의 기준·규모·기간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p>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내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제5조(지원의 범위 및 신청)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시거처 지원
2. 주택복구비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택복구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주택복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전소: 최대 2,000만원
2. 반소: 최대 1,000만원
3. 부분소: 최대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복구비는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주택복구비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화재피해 지역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팀장
2. 화재피해 지역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3. 화재피해 지역 관할 시·군 주민복지업무 담당 과장
4. 화재피해 지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5. 도내 구호단체 등 민간단체 직원
6. 그 밖에 화재 또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사망·실종,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재 산 피 해	총 피 해	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부 동 산				
	동 산				
	소실정도	[]전소 []반소 []부분소			

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		계약기간	
임시거처 현황	거처장소		거처인원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 임시거처 지원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

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기능)”을“(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조제5항”을 “제5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이”를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본 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력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력위원회 회의는”을 “도지사는”으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를 “경우에 회의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3호 중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를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을 “구성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기능)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p>1. ~ 6. (생략)</p> <p><u>제3조(구성) ① (생략)</u></p> <p>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생략)</p> <p>2. <u>제3조제5항의 위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u></p> <p>③ (생략)</p> <p>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u>소방본 부장</u>으로 한다.</p> <p>⑤ (생략)</p> <p><u><신설></u></p>	<p><u>제2조(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u>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u></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5항----- 도지사</u> <u>사가 -----</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소방본부장</u>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협력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5조(임기) ① <u>당연직</u> <u>위원의 임기</u>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u>위촉직</u> <u>위원의 임기</u>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위원의 사임</u> 등으로 새로 위촉된 <u>위원의 임기</u>는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으로 한다.</p> <p>② <u>위촉직</u> <u>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u>할 수 있다.</p>	<p><삭제></p>
<p>제6조(운영) <u>협력위원회</u> <u>활동은</u> <u>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u>한다.</p> <p>1. <u>평상시</u> : <u>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 안전 예방활동을 수행</u>한다.</p> <p>2. <u>재난 발생시</u> : <u>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기업·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u>으로 <u>재난대응 활동을 전개</u>한다.</p>	<p><삭제></p>
<p>제7조(회의) ① <u>협력위원회</u> <u>회의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u>집할 수 있다.</p>	<p>제7조(회의) ① <u>도지사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 회의</u>를 소집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p> <p>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p> <p>3. 그 밖에 도지사가 ----- ----- -----</p> <p>② ----- 구성위원 ----- -----.</p> <p><삭제></p>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과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협회에는 원활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군별 학교 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회의 구성) ① 협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지역협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을 협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협회의 회장은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선출과 종류 및 정수 등 협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회를 개최하는 날로 하며, 협회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면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5조(협회의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의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사항 및 소집 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등) ①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③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경상북도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교육활동과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의 조성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경상북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명시된 활동을 말한다.
4. “수업권”이란 「교육기본법」 제14조제3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서 파생된 직무권한을 말한다.

5. “학생”이란 각급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6. “학습권”이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기본으로 학생이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7.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① 교원·학생·학부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③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시책 수립에 있어 매년 교원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과 학습권의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자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행위의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①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각자 교육활동의 주체로써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교 내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에 교원과 학생을 존중하는 언행을 실천할 것
2. 올바른 인권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

③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학습의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교원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의 방해, 교원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생활화할 것

④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2. 학생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가정에서 지도할 것
3.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4. 전문기관으로부터 학생 안정 및 보호를 위한 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경우 학생의 정서·심리치료에 적극 협조할 것

제7조(학교 내 출입 관리)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내 출입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제도 구축
2. 교원의 동의 없는 외부인의 교실 출입 제한
3. 민원 및 상담 전용 공간의 별도 마련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 및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학부모 및 민원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3. 사전에 방문 의사나 예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4.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청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 및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임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다르게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교육감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상시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육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교육 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현장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
2.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강화 방안
4.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경제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공)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경제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5. 그 밖에 경제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교시설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사업
3.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유해물질 실태조사

6. 그 밖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물품 설치·구매) 학교의 장은 교육 기자재 및 학습교구의 구매,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유해물질의 적절한 유지·관리·점검 및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유해물질 예방·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직원 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
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된 경우로써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3. 그 밖에 교육감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
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민간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 복지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정책국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정보과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담당 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통폐합학교, 과대학교 등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통학 지원 등) ① (생 략)</p> <p> <u>〈신 설〉</u></p> <p> ② (생 략)</p>	<p>제6조(통학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 ② <u>교육감은 통폐합학교, 과대학교 등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p> <p> 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12세 미만”을 “12세 미만”으로, “만 12세 이상”을 “12세 이상”으로 한다.

제2조(「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제3조(「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2세 미만은 아동으로 만 12세 이상은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4. ----- 19세 ----- ----- 12세 미만----- ----- 12세 이상-----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동의 및 지원중단)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지원 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만 14세 미만인 학생에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동의 및 지원중단) ----- ----- ----- -----14세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3조의2(입주자 선정)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관사 입주자 선정 시 인사발령으로 다른 시·군지역에서 전입하는 공무원, 신규 공무원, 만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공무원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p> <p>② (생략)</p>	<p>제43조의2(입주자 선정) ① ----- ----- ----- 18세 ----- ----- -----.</p> <p>② (현행과 같음)</p>

＝ 예산안 ＝

○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23. 8. 17.)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2,739,360,000	100.00%	12,599,659,000	100.00%	139,701,000	1.11%
일반회계	11,124,070,000	87.32%	10,993,600,000	87.25%	130,470,000	1.19%
특별회계	1,615,290,000	12.68%	1,606,059,000	12.75%	9,231,000	0.57%
기타특별회계	1,615,290,000	12.68%	1,606,059,000	12.75%	9,231,000	0.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7,889,000	5.95%	757,667,000	6.01%	222,000	0.03%
치수사업특별회계	6,079,000	0.05%	5,629,000	0.04%	450,000	7.9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00,000	0.03%	3,300,000	0.03%	0	0.00%
발전소등지역자원 시설세특별회계	119,052,000	0.93%	118,560,000	0.94%	492,000	0.4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6,050,000	0.36%	46,050,000	0.37%	0	0.00%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10,627,000	0.08%	10,627,000	0.08%	0	0.00%
소방특별회계	672,293,000	5.28%	664,226,000	5.27%	8,067,000	1.21%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12,739,360,000	100.00%	12,599,659,000	100.00%	139,701,000	1.11%
100 지방세수입	2,914,000,000	22.87%	3,018,000,000	23.95%	△104,000,000	△3.45%
110 지방세	2,914,000,000	22.87%	3,018,000,000	23.95%	△104,000,000	△3.45%
200 세외수입	190,856,497	1.50%	173,992,595	1.38%	16,863,902	9.69%
210 경상적세외수입	33,902,844	0.27%	29,780,544	0.24%	4,122,300	13.84%
220 임시적세외수입	108,255,095	0.85%	95,513,493	0.76%	12,741,602	13.34%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698,558	0.38%	48,698,558	0.39%	0	0.00%
300 지방교부세	2,077,000,957	16.30%	2,087,496,918	16.57%	△10,495,961	△0.50%
310 지방교부세	2,028,632,709	15.92%	2,039,128,670	16.18%	△10,495,961	△0.51%
320 지방소멸대응기금	48,368,248	0.38%	48,368,248	0.38%	0	0.00%
500 보조금	6,328,134,221	49.67%	6,253,710,104	49.63%	74,424,117	1.19%
510 국고보조금등	6,328,134,221	49.67%	6,253,710,104	49.63%	74,424,117	1.1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9,368,325	9.65%	1,066,459,383	8.46%	162,908,942	15.28%
710 보전수입등	364,995,491	2.87%	195,587,986	1.55%	169,407,505	86.61%
720 내부거래	864,372,834	6.79%	870,871,397	6.91%	△6,498,563	△0.75%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12,739,360,000	100.00%	12,599,659,000	100.00%	139,701,000	1.11%
010 일반공공행정	1,052,806,633	8.26%	1,056,079,453	8.38%	△3,272,820	△0.31%
020 공공질서및안전	915,868,202	7.19%	890,957,746	7.07%	24,910,456	2.80%
050 교육	443,749,034	3.48%	446,805,034	3.55%	△3,056,000	△0.68%
060 문화및관광	483,296,190	3.79%	480,470,303	3.81%	2,825,887	0.59%
070 환경	913,056,847	7.17%	898,518,641	7.13%	14,538,206	1.62%
080 사회복지	4,627,118,144	36.32%	4,602,932,142	36.53%	24,186,002	0.53%
090 보건	222,009,654	1.74%	218,116,202	1.73%	3,893,452	1.79%
100 농림해양수산	1,559,472,280	12.24%	1,528,616,292	12.13%	30,855,988	2.0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81,459,860	3.78%	471,970,007	3.75%	9,489,853	2.01%
120 교통및물류	476,943,925	3.74%	463,842,829	3.68%	13,101,096	2.82%
140 국토및지역개발	649,030,272	5.09%	630,223,018	5.00%	18,807,254	2.98%
150 과학기술	68,284,976	0.54%	59,168,621	0.47%	9,116,355	15.41%
160 예비비	62,000,000	0.49%	62,361,000	0.49%	△361,000	△0.58%
900 기타	784,263,983	6.16%	789,597,712	6.27%	△5,333,729	△0.68%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세서 쪽	실국명	내용(부기명)	조정내역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감액조서		3건	80,000	0	△80,000
87	경제산업국	경상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	40,000	0	△40,000
327	농업기술원	도서지역농촌여성여가활동지원	20,000	0	△20,000
327	농업기술원	협력기관(교육청,국민건강보험공단)연계치유농업프로그램운영	20,000	0	△20,000

명세서 쪽	실국명	내용(부기명)	조정내역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내부유보금		1건	0	80,000	80,000
	기획조정실	내부유보금	0	80,000	80,000

二 동 의 안 二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도지사('23. 8. 17.)
-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23. 8. 17.)
-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23. 8. 17.)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도지사('23. 8. 17.)
-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교육감('23. 8. 1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

□ 감면내용

가. 재산 피해자 지원

1) 취득세

- 집중호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이하 “피해일”이라 한다)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건축물은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면허분 등록면허세

- 집중호우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피해 재산을 대체하기 위해 면허(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등)를 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집중호우 피해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한다.

나.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

1) 취득세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

□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명 : 경북비자센터운영

나. 민간위탁 필요성

- 「경북비자센터운영」은 우리 도에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와 일자리연계, 체류자격 변경(광역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지원 등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것임
- 경북비자센터운영 주요사무는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및 동포가족 유치활동, 일자리연계,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상담 및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신청 지원 등 외국인 정착을 위한 현장 접근성 및 정책체감도가 매우 높은 영역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이 필요함.
- 이에, 행정기관 직접운영보다 체류자격별·분야별·생애주기별 외국인 관계지원기관 및 단체 네트워킹, 외국인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요구, 수요자중심 정착지원 사업 공급 등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외국인 관리

및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광역비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홍보, 국내거주 지역 우수인재 및 동포가족 유치활동
- 외국인 구직자·기업 외국인 구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취업연계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 및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
- 기타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라.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3. 10 ~ 2026. 9(36개월)
- 소재지 : 경상북도 내(수탁자 공개모집)
- 지원시설 : 해당없음(위탁 시설은 없음)
- 사업비 : 3억원(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 연간 300백만원

- 인건비 : 4명(190백만원)
- 운영비 : 공공요금, 사무용품, 임대료, 출장비 등(40백만원)
- 사업비 : 사업추진비 관계기관 전문성 강화, 컨설팅 등 (70백만원)

사.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 적정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괄표

구 분		수 량	면 적	금액(백만원)	비 고	
취득	계	부지	3필지	71,349㎡	24,959	
		건물	53동	21,230㎡	36,528	
		기타				
	1. 매입	부지	3필지	71,349㎡	24,959	
		건물	52동	12,500㎡	23,018	신축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부지				
		건물	1동	8,730㎡	13,510	기부채납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 가격 (백만원)	취득시기 (계약방법)	취득사유 및 소유지분	비고
	지목	소재지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				
계	토지		71,349	24,959			
	건물		21,230	36,528			
	기타						
1	토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61 일원	43,273	11,459	'26.12. (현물배당)	- 국민체육센터, 외부 체육시설 건립	체육 진흥과
	건물	"	6,000	3,018	'26.12 (일반경쟁)	- 토지 : 도 100% - 건물 : 도 100%	
2	건물	경주시 천군동 140-6번지	8,730	13,510	'25. 4. (기부채납)	- 미디어아트 뮤지엄 기부채납 - 도 50%, 경주시 50%	문화 산업과
3	토지	안동시 풍천면 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단지 (H-3.4)	28,076	13,500	'25. 3. (일반경쟁)	- 하회 과학자마을 조성 - 토지 : 도 100% - 건물 : 도 100%	건축 디자인과
	건물	" (주택 50호)	5,000	16,500			
	건물	" (커뮤니티센터)	1,500	3,500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
가격을 적용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주요내용

가. 수소충전소 구축 필요성

- 천년숲 수소충전소는 2022년 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50억원(국비 25, 민간 25)을 들여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57번지 천년숲 일원에 부지면적 2,380㎡에 시간당 25kg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2기를 설치하여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소차 전환 가속화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보조 사업임.
- 우리 도내에는 현재 수소충전소 6개소 6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5개소 9기가 2023년에 준공 예정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5개소 14기를 추진하고 있음.
- 도민 편의 및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수소차 전환 가속화로 석유연료로 인한 탄소 및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 물질 감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필요함

□ 사업내용

가. 사업명 : 천년숲 수소충전소 구축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 위치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57번지 일원
(면적 : 2,380㎡)
- 사업규모 : 25kg/hr × 2기
- 사업비 : 50억원(국비 25, 사업자 25)
- 사업방식 : 민간자본보조사업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

□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 나. 위탁기간 : 2024. 4. 1. ~ 2026. 12. 31.(2년 9개월, 2개소),
2024. 1. 1. ~ 2026. 12. 31.(3년, 1개소)
- 다. 위탁 기관수: 3기관
- 라. 위탁 대상: 미정
- 마. 사업비: 금3,825,000,000원(금삼십팔억이천오백만원)
- 바. 사업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1) 자살(시도) 및 자해 등 위기 학생
 - 2) 자살 사망으로 위기가 발생한 학교
 - 3) 학교 적응 및 마음건강 상태 어려움이 발견된 학생
 - 4) 관심군, 고위험군, 정상군 학생에 대한 정서 지원
- 사. 사업 내용
 - 1) 학교(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방문 맞춤형 위기관리
 - 2)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역량 강화
 - 3) 마음건강 인식 개선
 - 4) 생명사랑 문화 정착

㉔ 결 의 안 ㉔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대진 의원 외 9명('23. 9. 1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의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출석일시

-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
 - 회기(안) : 2023. 10. 10.(화) ~ 10. 20.(금) / 11일간
 - ※ 의사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개의일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추가 및 변경된 날을 출석일시로 함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출석범위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출석요구 이유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의에 대한 답변

의정활동보고서

(제341회 임시회)



2023. 11. 인쇄 / 2023. 1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